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 FTA FTA 무역리포트

# TRADE REPORT

March 2022 Vol. 01 (통권 37호)



2022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 FTA FTA 무역리포트

# TRADE REPORT

March 2022 Vol. 01 (통권 37호)



2022



# Contents

##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2 Vol.01 (통권 37호)



### FTA FOCUS

008

**2022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김중호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FTA 동향

020

### FTA TOON

044

### FTA EXPERTS

048

**RCEP 활용 극대화를 위한 누적기준의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

김현철 | 관세법인 패스윈(PASSWIN) 대표관세사

056

**RCEP 활용 이점과 유의사항**

임목삼 |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물류과 교수

### FTA ANALYSIS

066

**RCEP 발효 시 ASEAN 국가와의 교역 효과 분석**

김진희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078

**RCEP으로 기대되는 일본 FTA 체결동향 및 통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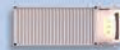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 FTA 품목분류

096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HS 품목분류표의 변화와 FTA 활용전략 (HS 2022 중심)**

양영미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 해외통관애로

118

### 최근 베트남 관세 제도

김용철 |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관세영사

## FTA 100% 활용하기

128

### 메타버스의 등장과 FTA

강효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 쉬어가기

139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42

###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HS 2022 개정사항 반영)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허성빈 | 관세사, 관세법인 보강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54

### FTA-PASS 400% 활용하기

- 원산지(포괄)확인서 활용 방법 -

구분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70

### 기업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고(小考)

임형철 |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 FTA 지도

180

### 한눈에 보는 2020년-2021년 주요 산업별 (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ATA TRADE REPORT

2

730



# FTA FOCUS



## 2022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2022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I. 들어가며

이번 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한동안 계속 되던 소위 ‘더블링’ 증가세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듯하다.

이로써 만 2년 넘게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왔던 코로나19도 이제 계절 독감의 한 종(種)으로 자리 잡고 하반기부터는 그리웠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관세청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전통적인 조직체계를 과감히 개편하였고, 그 결과 직제상 따로 분리되어 있던 ‘FTA’와 ‘국제협력’ 업무를 통합한 ‘국제관세협력국’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그간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협력 및 WCO 등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꾸준히 축적해 온 관세외교 역량을 우리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이(變異)를 통해 재확산을 거듭하는 코로나 19로 인해 주요 교역국 및 FTA 체결상대국 등과의 인적·물적 교류에 기반하는 국제관세 협력 업무는 여타의 업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힘든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두가 조직개편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금은 더디지만 그러나 쉽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올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발효,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해인만큼 이번 지면을 빌어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고 2022년 FTA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

앞서 글머리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2021년은 국제관세협력국 신설 원년(元年)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FTA 활용 및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의 대외협력 및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다.

먼저 서울·인천 등 전국 6개 세관에 <K-뉴딜·新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중기부·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아마존(Amazon) 신규 진출을 지원하고 K-푸드 수출을 돕는 등 28개 분야 총 889개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 이력과 상관없이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협정관세 신청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였고, 인도측의 입항전 수입 신고 의무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원산지기준 충족 및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199개 품목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또한,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가 한-EU 협정상의 중간재 규정을 활용해 완성차의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49만대 약 10조원 규모의 EU 수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6대 기획검증 테마를 선정하고 국민건강, 먹거리, 가격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기업 368社(996억원)에 대해 집중 검증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 개최된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 관련 서류의 사소한 불일치나 하자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의견을 아세안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 애로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및 대면회의 개최 불가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 관세당국(115개국)과의 컨택포인트 구축, 인도·청도 등 통관애로가 빈번한 지역에서의 관세관 활동 확대, 주요 의제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중단 없는 관세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120여 건을 발굴·해소함으로써 약 45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 III. 2022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추진방향

2022년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확대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량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수출 역시 세계 최대 MEGA FTA인 RCEP 발효 등으로 성장세가 기대되나, 미·중 간 기술 주도권 확보와 자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마찰 재점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는 여전히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성과 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MEGA FTA 발효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 현장에서부터 무역하기 좋은 통상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22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RCEP, CPTPP 등 MEGA FTA 활용지원 체제로 전환

먼저, 본청에 「관세청 RCEP 활용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본부 및 직할세관에는 「RCEP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 일본과 「한-일 FTA 이행협력 MOU」를 맺어 FTA 이행 및 검증과 관련한 세부 운영절차를 시행 초기단계부터 명확히 하고, 수출기업을 ‘對일본 수출, 최초 FTA 활용, 인증수출자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밀착 지원을 통해 RCEP 활용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 나가는 한편,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 설명회, 민·관 합동 컨설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RCEP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자협정에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의 채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수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 시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신규 체결 협정 증가에 따른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 일상회복에 맞춘 현장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AEO 및 인증수출자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할인,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혜택을 확대 제공하고, 타 정부기관의 코로나 19 및 물류대란 피해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세·중소기업들이 조기에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정책 기조에 맞춰 대체가능물품, 누적, 중간재 등 원산지결정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新·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폐기물 재활용품 등 탄소중립 수출

물품의 한국산 인정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모의검증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産으로 인정하는 EU-베트남 FTA 누적 규정의 활용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베 양국 간 「원산지검증 행정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對 베트남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누적 규정 활용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3. 단계별 해외통관 지원기반 구축으로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

본청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관, 코트라 및 재외공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및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세관 파견, 신남방·중남미·중양아시아 국가와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현장 지원 역시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문서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실시간 교환 확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국가인 베트남과는 연내에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완료하고, 인도와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페루·중미 등 자율발급 국가와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e-CO' 제도 도입을 위해 MOU 체결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4. 원산지검증 생산성 제고로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원산지검증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불법 특혜를 근절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한 우회수입, PSR 개정요구 품목 및 신규 FTA 발효국 수입물품 등에 대한 기획검증을 통해 부당특혜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다국적기업의

수입물품과 우범 환급대상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조사팀과 합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터키 등 일부 국가의 동일업체·품목에 대한 반복 검증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검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세도움정보」에 원산지 위험정보를 추가 탑재하여 원산지검증 전 미리 원산지 진단 결과 확인된 오류를 납세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5. 통관 원활화 환경 조성을 위한 K-Customs 역할 확대

WCO와 관세청, 유관 정부기관 간 정보교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글로벌 동향을 활용한 '주요 정책결정 Reference'를 생산·배포하는 등 국제동향과 우리청 주요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세관협력기금(CCF-K)을 활용해 WCO 회원국 간 품목분류 검색연계 시스템 및 품목분류 결정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관세청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의 해외진출사업 추진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관리 인프라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우리청의 FTA-PASS 운영 경험을 통관환경이 낙후된 개도국 등과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

### 6.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국제협력 활동 전개

한편,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오는 6월 예정된 차기 WCO 사무차장 선거에서 우리청 입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지원단(T/F)을 구성하고 선거전략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내외 관세외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WTO·다자개발은행 등 타 국제기구와의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세분야 국제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관세청의 국제활동 외연을 다양화하는 등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IV. 맺음말

지난해 델타 변이에 이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 새 역사를 쓴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바이오헬스·2차전지 등 新산업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연간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 불,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 불, 무역수지는 295억 불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무역액도 1조 2,596억 불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순위 8위에 올라선 것이 그것이다.

한편, 2022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맞이 하는 세계 경제회복의 원년(元年)이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RCEP 등 FTA 활용, 원산지관리 및 검증 대응 역량제고,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 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무역 원활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에 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극복해 온 만큼 2022년은 관세행정의 동반자인 수출입업체와 관련 종사자 모두 예전의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FREE TRADE REPORT



# FTA 동향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

코로나19 이후 '집콕' 여가생활이 수입에도 영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 수출의 길을 더 넓게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아프리카 FTA 추진방향, 민간 전문가 의견 듣는다

ISSUE IN ISSUE ❶ 이탈리아 2022년 경제동향

ISSUE IN ISSUE ❷ 2022년 영국 경제 및 산업 전망

ISSUE IN ISSUE ❸ RCEP 발효와 중국 무역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기업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6일(목) 서울본부 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한 RCEP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할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 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 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 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1월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 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계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더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관세청 FTA 포털 :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코로나19 이후 '집콕' 여가생활이 수입에도 영향 - 집에서 여가를 보내기 위한 관련물품의 수입 증가 -

코로나19시대 바뀐 '집콕' 여가생활이 관련 품목 수입에도 영향을 주었다.

2021년 합계 수입액 9,55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5% 증가하였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한 시기에 관련품목 수입액 증가세이다.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 수입액) 대비 지난해(2021년) 컴퓨터, TV, 운동기구는 2배, 비디오게임기는 3배 수입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시대 바뀐 '집콕' 여가생활 변화가 관련물품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한 품목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 TV(LCD·OLED), 프로젝터, 운동기구, 비디오게임기, 블록완구, 카드·보드게임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 물품의 2021년 합계 수입액은 9,55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6.5% 증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7.3%) 이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큰 폭 증가한 유행 시기\*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늘어난 유행시기마다 이동량 크게 감소"(서울시, 20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li> </ul>	OTT* 확산, 게임, 온라인 공연 등 두루 활용 확대 *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영화 등 미디어콘텐츠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LCD·OLED) * LCD·OLED완제품 한정</li> <li>● 프로젝터</li> </ul>	극장대신 대화면으로 영상미디어 시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기구</li> </ul>	건강에 대한 관심에 체육관 대신 홈트, 홈짐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게임기 ● 블록완구 ● 카드·보드게임</li> </ul>	집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오락용품 사용 증가



품목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집콕 생활로 여행 등 실외활동이 감소하고, 실내 위주의 영상미디어 시청, 게임·인터넷, 운동 등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속 서울시민 생활상(서울시, 2021.5월)

재택근무는 물론 여가시간에 OTT 이용 확산, 게임, 최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연관람\* 등 외부와 연결을 위한 필수품인 노트북·태블릿 등 컴퓨터 수입액(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공연 새롭게 부상”(한국콘텐츠진흥원, 2022.1월)

극장 대신 집에서 대화면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감상하기 위한 TV: LCD·OLED(전년대비 77.8%), 프로젝터(20.4%)이다. 특히 최근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화면 OLED TV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TV 시청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코로나19 블루에 따른 보상소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기만족을 위해서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할 의향 있음”(대한상공회의소, 2021.6월)

‘홈트’, ‘홈집’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등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운동기구(전년대비 33.1%) 수입 증가, 2017~2019년 대비 2020년 1.6배, 2021년에는 2배 이상 수요가 증가한 셈이다.

\* Home gyms hit their stride during Covid(The wall street journal, 2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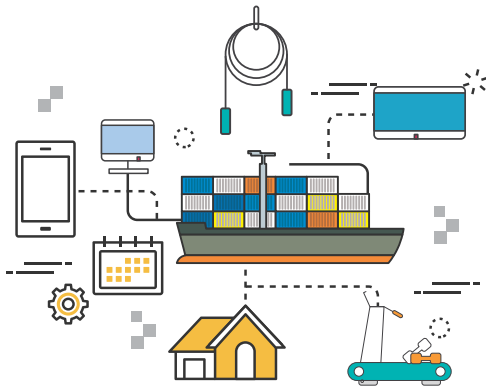
실내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적합한 비디오게임기(전년대비 70.5%), 아이뿐 아니라 키덜트 수요가 증가\*한 블록완구(38.9%), 카드·보드게임(107.0%) 수입이 증가한다.

\* Lego-playing kidults help... sales during Covid lockdown(The Guardian, 2020.9월)

\* Traditional toys... comeback, kidults are helping drive the trend(The exchange, 2021.12월)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컴퓨터, 프로젝터, 운동기구, 게임기, 블록완구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여가품목 합계수입액 순위: 중국(비중 61.9%), 베트남(16.1), 싱가포르(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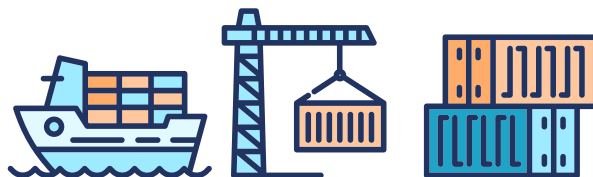


2021년 TV(LCD·OLED) 최대수입국은 39.9%)이고, 카드·보드게임은 미국산 OLED TV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국내가전사 (5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현지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비중

[코로나19 여가생활 품목별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

구분	2017년 수입액 (증감률)	2018년 수입액 (증감률)	2019년 수입액 (증감률)	2020년 수입액 (증감률)	2021년 수입액 (증감률)
합계	5,078	5,591	5,972	7,003	9,557
	(23.0)	(10.1)	(6.8)	(17.3)	(36.5)
컴퓨터 (노트북·태블릿 등)	3,946	4,434	4,754	5,553	7,239
	(25.2)	(12.4)	(7.2)	(16.8)	(30.4)
TV(LCD·OLED)	637	624	606	704	1,251
	(27.3)	(△2.1)	(△2.8)	(16.1)	(77.8)
프로젝터	112	122	137	128	155
	(5.0)	(8.9)	(12.6)	(△6.3)	(20.4)
운동기구	150	197	207	287	382
	(19.6)	(31.5)	(4.9)	(38.7)	(33.1)
비디오게임기	107	96	149	179	305
	(81.0)	(△9.8)	(54.7)	(20.3)	(70.5)
블록완구	110	104	104	133	185
	(△35.4)	(△4.9)	(△0.3)	(27.9)	(38.9)
카드·보드게임	16	14	15	19	39
	(17.0)	(△13.1)	(7.9)	(25.7)	(107.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 수출의 길을 더 넓게 - 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 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 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 하였다.

[대일본 관세 수혜품목]

[단위:%, %p]

품목	품명	품목분류 6단위	최혜국 (MFN)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세율	인하폭
섬유류	합성스테인플섬유	550320	6.6	0	6.6
	폴리에스터직물	540761	5.7	0	5.7
농림수산물	식품 보조제	210690	12.5	11.4	1.1
플라스틱제품	판, 쉬트	392062	4.8	4.4	0.4
화학공업제품	아크릴중합체	390690	2.8	2.5	0.3
	폴리아미드수지	390810	3.7	3.4	0.3
철강금속제품	구리-아연 합금 코일	740921	3.0	2.7	0.3
	철강제용기	731100	3.3	3.1	0.2
	알루미늄판	760612	2.0	1.8	0.2
		760611	2.0	1.8	0.2
광산물	휘발유, 나프타 등	271012	2.5~2.2	2.3~2.1	0.2
	제트유, 절삭유 등	271019	3.9	3.7	0.2

수해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 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FTA 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 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2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4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 031-8054-7034

##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7일(금) 무역협회에서 양기욱 FTA정책관 주재로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2021.1.1일 발효한 한-영 FTA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동 FTA 협정문\*에 따라 추진될 연내 개선협상과 관련하여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협정문 제15.5조의2) 추가 자유화 추구 위해 FTA 발효 후 2년 내 협상개시 의무

산업부는 한-영 FTA 발효 후 한-영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한-영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금) 10:30 서울 무역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주재), FTA이행과장 등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KIEP, 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업계·전문가) 핀테크산업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철도산업협회, 네이버, 왓차, 서울대·중앙대·한국외대 교수 등
- **논의주제** : 한-영 FTA 이행 평가 및 개선협상 추진 관련 의견 청취

※ 한-영 교역(2021.1~11월) : 106억불(33% ↑) / 투자(2021년 1~3분기) : 114건(3% ↓), 9억불

동 기간 한·영 FTA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2021.1.1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 既제공

업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개선협상에서 디지털·투자 분야 등 관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협상 관련 동향을 업계 등과 지속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영측과 한-영 FTA 무역위원회(장관급)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며, 한-영 통상장관회담(2021.11.5, 글래스고) 등 계기 FTA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앞으로도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영국 측과 협의 하에 연내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통상절차법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 공청회,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1.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은 RCEP 발효(20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더욱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 ②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한다.

\* 중국,일본,베트남 등 10개국은 기발효(2022.1.1.)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발효일 미정

\*\* 對RCEP 수출액은 2,543억불 (2020년 기준, 무역협회)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6%차지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구분	WTO	RCEP
근거	GATT 및 WTO 협정	RCEP 협정
대상	해당 물품 수출국 모두에 적용	RCEP 체결국 당사국
조치 수단	수입물량 제한, 관세 인상 등	관세 인상 등
조치 기간	최대 8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최대 4년 미만(연장기간 포함)

## 한눈에 알아보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 - 8개 정부부처·17개 관계기관, 총 47개 지원사업(6,686억원) 통합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 **(정부부처 : 8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 **(유관기관 : 17개)**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양봉협회, 농협경제제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약 6,686억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 (2020년) 40개, 5,652억원 → (2021년) 42개  
\*\* 6,527억원 → (2022년) 46개, 6,686억원

주요 지원 내용은 ① FTA 활용촉진, ② FTA 해외시장진출, ③ 산업경쟁력 강화, ④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6개 사업으로서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FTA 활용촉진 : 10개, 132억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 : 22개, 4,449억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 : 11개, 1,745억원, ④ 한·중 FTA 특화사업 : 3개, 360억원

① (FTA 활용촉진) 수출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쉽게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② (FTA 해외시장진출)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산업경쟁력 강화)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에 무역 조정·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한·중 FTA 특화사업)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FTA 지원 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지원 사업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022.2.1)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월 8일(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① 전문가 포럼, ② 유관기관 세미나 및 ③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간 유튜브(<https://youtu.be/LLWDFqaCOzQ> 또는 유튜브에서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검색)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포함해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하였다.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 ‘원팀’(One Team)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RCEP 활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RCEP 수출 유망산업·품목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당부”하면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설치된 「RCEP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며, 최초 FTA체결국인 일본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약상대국별 협정 이행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FTA활용환경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뿐 아니라 역내 현지 진출 기업들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현지(중국은 비대면방식(Zoom)으로 연결)를 이원으로 연결해 진행되었다.

김종주 산업부 과장 및 심갑영 한국외대 교수의 기초발제에 이어 구민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유관기관·정부를 대표한

5명의 토론자가 ‘RCEP활용역내글로벌 공급망(GVC) 활성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①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 및 해외 중간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기업 생산성 증대, CPTPP, 한·중·일 등 추가 FTA 체결협상 토대 마련 등 RCEP의 기회요인과 함께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안보 이슈, RCEP 원산지 규정상 자율발급 활용 등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검토도 함께 요구하였다.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③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④ RCEP 역내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아프리카 FTA 추진방향, 민간 전문가 의견 듣는다

- 산업통상자원부,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수) 오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이집트 무역경제파트너십 공동연구 개시 합의(1.20)에 이어, 향후 아프리카와의 FTA 추진을 본격화하는데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윤중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 유망시장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FTA 추진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2021.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고 역내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프리카와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아프리카 FTA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ISSUE IN ISSUE ①

## 이탈리아 2022년 경제 동향

2021년도 이탈리아 경제는 코로나19의 피해에서 벗어나 급격한 회복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21년 GDP는 6.3%로 추정해 전년도 -8.9%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세를 넘어서 성장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신뢰지수에도 잘 나타나 2020년 이후 기업신뢰지수는 큰 폭으로 회복세를 보인 후 2021년 3분기 이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1년 12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2022년 1분기는 경제회복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탈리아 2022년 경제동향

유로존과 이탈리아의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는 2021년 1분기에 급격한 회복세를 통해 2분기부터 정상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로존보다 회복세가 다소 늦게 시작됐으나

회복의 폭은 더 커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유로존의 경제심리지수는 하락세로 접어든 반면 이탈리아는 그 영향이 다소 느리고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 1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도 이탈리아 경제를 전망한 기관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폭은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 기준, 2021년 GDP는 6.3%로 회복세로 전환된 이후 2022년도 4.7%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GDP는 2021년 5.0%에서 2022년 4.3%로 전망해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속도는 유로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치는 오미크론의 확산 이전에 발표된 자료로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경제인협회 산하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이탈리아 GDP는 전분기 대비 -0.8%로 전망하고 있다.

### 세부 경제 지표

2021년 이탈리아 가계소비는 5.1%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에는 4.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2020년도 하회 폭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로 소비심리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증가세로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인연합 산하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의 영향보다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 경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21년도부터 본격화된 모습을 보이며 +15.7%를 기록했다. 2017~2020년 '산업 4.0' 정책을 통해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정책 및 2022년부터 본격화될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그램에 따라, 2022년에는 7.5%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도 일자리와 실업률은 또한 2021년에 이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도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진행되 실업률이 9.6%를 보인 반면, 경제 정상화로 인해 일자리 또한 6.1% 증가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에는 실업률은 9.3%로 감소하며 일자리 또한 4.1%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도 이탈리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13.2%, 수입은 +13.6%로 내수시장 회복과 함께 인근 유럽국가와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GDP 대비 2.8%로 흑자를 유지했으며, 2022년도에는 수출입 모두 6~7%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경상수지의 흑자 폭 또한 GDP 대비 2.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이탈리아 경제전문기관인 경제인협회 산하 경제연구원(CsC) 인터뷰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제는 2021년도 3분기까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2021년 4분기 오미크론의 확산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됐으며, 2022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이 역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성장 추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2분기부터는 EU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젝트인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그램의 본격화 등으로 다시 회복세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소비 회복 속도가 가시화될 경우 경제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 였다.

2022년도 이탈리아 경제는 2021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부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내수 소비 및 기업의 설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과 일자리 또한 안정적인 수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탈리아는 국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의 전환인 디지털, 비대면, 친환경, 보건 등 관련 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R&D 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주력산업의 빠른 생산성 회복과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시장 전환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기에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이탈리아 경제인협회 산하 경제연구원(CsC), 일간지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 2022년 영국 경제 및 산업 전망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영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부터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경제성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지속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백신효과 저하 등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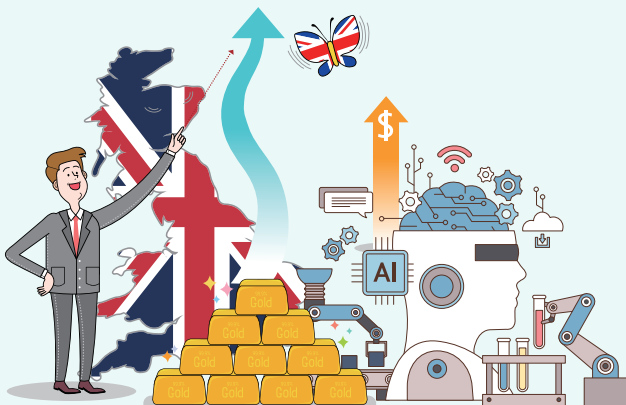
영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급망 개선으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고 두 번째로 충분한 복원력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 경제성장이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MPC는 2021년 12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하였고, HMRC(영국국세청) 이자율도 영국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연체금 금리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22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1.0% 증가로 전망하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산업연맹(CBI)은 2021년 경제성장률이 8.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 6.9%로 예상하였으나 공급망 우려에 따른 생산량 부족의 비관적인 전망으로 2022년도 전망치를 기존 6.9%에서 5.1%로 하향 조정하였다.



글로벌회계법인인 KPMG는 백신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명되어 2022년 1월 및 2월에 록다운 시행 및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생산량은 1.8%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2023년도에는 기업 투자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한다.

영국 정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750억파운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인프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투자확대 방안에 더해 공공지출 확대, 세금 인하, 저소득 가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022년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지원 차원으로 타격이 큰 유통업체, 식당 등 사업체가 보유하는 부동산 등의 임대료에 기반한 사업세율을 낮추고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가구엔 지원을 확대하며 최저생활임금은 기존 시간당 8.91파운드에서

시간당 9.50파운드로 6.6% 인상하여 2022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① 제조업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2021년 11월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지만 2020년 2월과 비교할 때 공장 생산량은 2.2% 감소하였다.

지난해 브렉시트와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원유지 및 인플레이션 관련 투입비용 상승 초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Make UK (영국제조자협회)와 PwC(글로벌회계법인)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과 인력 투자, 신제품 개발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성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국적으로 일괄된 경제성장 달성법을 제시하여 보다 광범위한 산업 전략을 취하면 2022년에 생산성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 ② 항공운수업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으로 타격이 가장 컸던 항공업계는 백신접종 여부 및 자가격리 등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KPMG에 따르면 2020년 4월에 비해 2021년 10월 이후 히드로 공항의 여행객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9년 여행객 수와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항공수요 분석사인 Cirium에 따르면 2021년 영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전년 대비 71% 감소하고 국내선 항공편도 60% 감소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항공운수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 ③ 자동차 산업

영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21년 11월 75,7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영향으로 생산량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며 198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자동차 생산량은 각각 18.8% 및 30.4% 감소하여 총 30,487대가 감소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새로운 관세 통제가 발효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EU와의 원활한 국제 무역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대비한 영국 정부와 자동차 제조기업의 공급망 확충 및 기가 팩토리 등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의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④ 금융업

영국 국채 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인플레이션 및 정책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 11월 영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가는 2021년 9월 증 인플레이션 압력 및 정책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부터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유동성 상황이 일자리 보전 대책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144%)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125%)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재택근무 환경에 적합한 주거 수요 증가, 저축률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1년간의 주택가격이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 ⑤ 서비스업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 음식주문 및 식료품 배달 수요 증가로 배달경제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수요는 팬데믹 이전 대비 40%까지 증가하였지만, 배송 서비스 업체들의 배송기사 부족과 수익성 어려움으로 우버 및 딜리버루 등 운송서비스업체는 수익 확대를 위해 고군 분투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 신뢰지수(PMI)는 최근 코로나19 우려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일부 상품 품귀현상(예: 주유대란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비식품 소매업의 약 70%가 강제 폐쇄돼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추구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pNttSn=193085](https://dream.kotra.or.kr/kotrane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pNttSn=193085)



## RCEP 발효와 중국 무역 주요 포인트와 시사점

RCEP은 출범부터 서명까지 약 8년에 걸친 협정이다. RCEP 체결 이전 아세안은 이미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5개국과 각각 '아세안 10+1'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서로 다른 협정 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존재해, RCEP은 이를 통합해 역내 규칙을 통일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더 낮춰 무역자유화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RCEP은 회원국 22억 인구나 전 세계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며 무역규모, 직접투자 등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상호 간의 우위산업을 토대로 상호 무역 발전과 경쟁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정부의 입장

RCEP이 정착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일본, 아세안과 교역규모가 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주도적으로 RCEP 다자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은 빠르게 협정을 비준한 회원국 중 하나로 RCEP 발효와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협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총 701조의 구속적 의무로 서비스 개방, 투자 보호,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주관 정부 부처는 이미 협정이 발효에 맞춰 전면적인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예를 들어 관세 양허와 관련해 중국은 2021년 상반기 중 이미 관세 양허표 작성을 완료하고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동시에 RCEP 원산지 관리 방법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 조치를 제정해 협정 발효 시점에 맞춰 일제히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RCEP은 총

15개 회원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47%, GDP의 32%, 무역액의 29%, 직접투자의 33%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은 RCEP에서 각 분야의 1위 수준을 차지해 주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RCEP을 통해 중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유럽연합(EU) 등에 대응하는 3대 거대 경제권역을 구축해 중국의 미국·유럽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경제의 '외순환(外循环)'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21년 12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대외무역 안정과 RCEP 발효 후의 실시 사업 배치'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대외무역과 RCEP 활용을 위한 세부 배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1년 중국 수출입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대외무역은 불확실, 불안정, 불균형 요인 증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해상운송 비용, 대중 상품 및 원자재, 인건비 등의 가격이 대폭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기 간 조절'을 적절히 진행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주문량을 보장하고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주요 관점은 'RCEP 발효 후 은행의 역할'에 집중돼 있어 주목할 만하다.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302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93029)





## 한-멕시코 FTA 소개



특히나 올해는 수교 6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협력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도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아스텍 유물전, 수교 6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위 교역상대국입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1위 교역국, 한국은 멕시코의 아시아 2위 교역국(21년 기준)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FTA 체결 시 우리 업계의 수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현재 주요품목 멕시코의 관세율: 자동차(15-20%), 철강(15%), 냉장고(10-15%), TV(10-15%)

우리는 자동차,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합성수지 등 수출

멕시코는 원유, 광물 및 농축산물,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

북미 3국 간 무역협정인 USMCA 발효('20.7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통상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국가적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

다시 한번 잘 해 봅시다. 화이팅!!

# ETA TRADE REPORT





# FTA EXPERTS



## RCEP 활용 극대화를 위한 누적기준의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

김현철 관세법인 패스윈(PASSWIN) 대표관세사

## RCEP 활용 이점과 유의사항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물류과 교수

## RCEP 활용 극대화를 위한 누적기준의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



김현철  
관세법인 패스윈(PASSWIN)  
대표관세사

각 국가별 분업화된 공정 진행이 다수 발생 하게 되면서 단일 국가 내에서의 원산지 지위 획득이 어려운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MEGA FTA를 통한 누적기준 활용시 Regional Value Chain으로서 역내 원산지 지위 획득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향후의 누적기준 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 I. 서론

2022년 2월 1일, 우리나라에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MEGA FTA 협정이며,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이다. RCEP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규모의 28.7%, 인구의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이다.

정부는 이번 RCEP 체결을 통해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과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적권 보호·전자상거래 챗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 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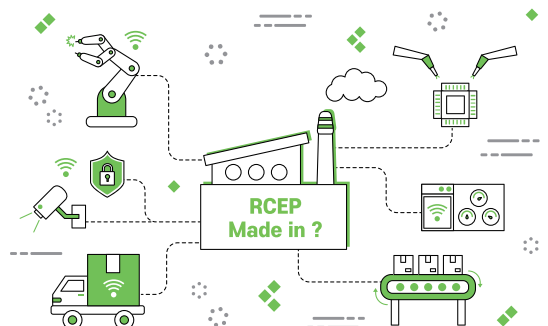
필자는 이러한 RCEP과 관련하여 수출입 현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누적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협정에서 누적기준은 원산지 결정의 주요한 보충기준으로서 자리잡고 있었지만, 실제 기업들의 활용

현장에서는 그다지 빈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Global Supply Chain 상의 문제로 인해 원재료 소싱국가와 완제품 수출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에 양자 FTA 협정에서의 실제적인 활용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 양자 FTA가 아닌 RCEP과 같은 MEGA FTA에서는 더 넓어진 경제 영토의 활용을 위한 누적기준 적용이 중요해진다. 즉, 다자 FTA협정인 RCEP을 필두하여 누적기준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기에서는 누적 기준에 대한 개념과 적용 주의사항 그리고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RCEP 활용 극대화를 위한 누적기준

### 1. 누적기준

#### 1) 누적기준의 개념

누적기준은 수출하는 상품(제품)의 FTA 원산지 지위를 결정(판정)함에 있어 체약 상대국산 재료를 자국산으로 간주하거나 체약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체약상대국산 재료를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재료 누적(부분 누적), 체약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 및 공정을 최종생산국 수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정 누적(완전 누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의 실질변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기준 적용시 각 기준에 대한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원산지 인정 영역 확대를 통해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 가공이 촉진되고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 2) 누적기준 활용시 주의사항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재료 A를 투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 B를 생산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투입된 재료 A를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제품 B에 대한 원산지 판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재료 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국산 재료 A에 대해 원산지 입증서류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재료 A가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핵심재료인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조사)시에도 해당 입증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며, 해당 서류가 없거나 일반(비특혜/표시)원산지 정보를 근거로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FTA(특혜)원산지가 부인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즉, 해당 FTA 적용 건에 대한 관세 추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RCEP에서의 누적기준

### 1) RCEP 누적기준

현재 RCEP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 중 재료 누적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공정 누적을 추가로 검토하여 완전 누적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양자 FTA와 달리, 다자(MEGA) FTA인 RCEP에서는 원재료 공급국과 완제품 수요국이 서로 달라도 재료 누적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

즉, 일본에서 원재료(부품)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기계 생산 후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RCEP에서 인정하는 누적기준(재료 누적)을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고 관세 혜택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2) RCEP 누적기준 적용 주의사항

이러한 누적기준의 적용 확대를 감안해서 인지 RCEP 원산지증명서 결정기준 기재 항목에는 누적기준 적용 여부를 표시토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원산지소명서상 누적기준을 체크하는 것 외에 원산지증명서 자체에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누적기준 적용과 달리 RCEP의 큰 특징인 관세차별 적용 물품에 대한 DV(Domestic Value) 20% 계산시에는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자 주의할 점으로 기억해야 한다.

DV 비율 계산시, 누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원산지국 판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III.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 1. 둘 이상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협의

우리나라 FTA관세법고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3항에서는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원재료 수입시에는 한·중 FTA가 유리하지만 완제품 수출시에는 RCEP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 협정 내에서만 재료누적이 허용되므로 수출국에서 동시에 2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 RCEP 원산지 판정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는 누적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정 상대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국내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증빙 구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수출 1건에 1개의 FTA원산지 증명서만 발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FTA 협정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RCEP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정국간 명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누적기준 활용 지원

#####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누적기준 증빙 활용 가능 명확화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원재료(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국내 원상태로 유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최초의 FTA원산지증명서를 전달 하라는 관련 기관의 해석(답변)이 있었으나 거래처 정보나 가격 노출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실무적으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재발행하여 유통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런데 현행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11번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산인 경우에만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1항에서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한국산인 경우에만 발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제12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누적기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최초 수입자가 수입시 수령한 FTA원산지증명서를 그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양식)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거래시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작성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sup>

## 2)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개정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9번에 나열된 원산지결정기준대로 체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PSR 또는 WP로 발행된 경우이거나 RCEP 원산지 증명서상 CTC, PE 등의 기준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현행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에 따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에 PSR, WP(PE)를 기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EU 및 추후 도입될 예정인 RCEP 자율 원산지신고서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1) 최근 진행된 정부기관 RCEP 설명회에서도 해당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참고] 현행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일부 발췌)

9.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1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 3. 타 협정 간 누적기준 인정 서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을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장은 2017.5.19.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도 누적기준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로 인정하고 세관에 이를 시달하였다.

즉, 상기와 같은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타 협정에 따른 FTA원산지증명서도 누적기준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와 함께 타국 관세 당국도 동일하게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 IV. 결론

정부에서는 최근 발효된 RCEP 외에 또 다른 MEGA FTA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가입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내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역내산 재료 원산지 인정과 역내에서 발생한 공정에 대한 부가가치 인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국가별 분업화된 공정 진행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단일 국가 내에서의 원산지 지위 획득이 어려운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MEGA FTA를 통한 누적기준 활용시 Regional Value Chain으로서 역내 원산지 지위 획득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 교역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RCEP 원산지증명서만 인정한다는 현재의 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RCEP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 FTA협정 상의 원산지 증명서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향후의 누적기준 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다만, 현재 도입되지 않은 RCEP 자율증명 도입시에는 이러한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기업들의 활용 극대화 및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해 상기한 개선사항들에 대한 회원국 간의 빠른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CEP 활용 이점과 유의사항



임복삼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물류과 교수







RCEP 협정은 세계적인 주요 생산 거점이자 생산 자원의 보고인 한국과 아세안 및 호주, 중국, 일본 등을 역내로 아우르는 협정으로, 기존의 협정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단순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역내 생산 기준과 재료 누적 조항 등으로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각 협정국별 기 체결된 협정의 활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 및 아세안, 베트남과의 협정보다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PSR의 완화 내지는 특혜관세활용의 용이는 수입의 증가를 초래한다. 수출업체의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기존의 협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동일한 수입 품목의 특혜관세혜택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조정 측면 등에서 유의해야 한다.

## 1. 들어가면서

COVID-19의 확산세로 인한 국제적인 교역량 감소세와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규제의 증가세 및 세계 주요 시장의 공급망 재편 등의 난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등 세계적인 경제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무역환경 중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교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정부가 무역 활성화를 국가적 명운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또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최근 20년간 급속하게 세계화를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체결국간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며, 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비교우위 자국 산업의 차별적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다.<sup>2)</sup>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의 세계화에 촉매역할을 했으며, 이는 유럽이나 미주 중심의 거대 경제권역인 EU나 USMCA(NAFTA의 New Version)처럼 아시아 권역에서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간 양자간 FTA는 원산지 비용 등 무역 비용이 증가로 인해 국내외 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었으나, 양자간 FTA의 발전 형태인 다자간 FTA로 인하여 FTA의 효과가 매우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sup>3)</sup>

지난 해 11월 1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15개국<sup>4)</sup>은 RCEP에 최종 서명하였고, 이어 우리나라는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 1일부터 RCEP이 유효하게 되었다.

1) 임목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대비 실무적 유의 사항 연구', 「계간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21년 가을호, p. 21.  
 2) 임목삼·임성철,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1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6. 12, p. 90.  
 3) 임목삼, '한국의 중간재 교역 증진에 따른 FTA 원산지 교차 누적 활용 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2, p. 92.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은 인도를 포함하여 16개국이었으나, 인도가 최종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서명국은 15개국임(대한민국 · 뉴질랜드 · 라오인민주주의공화국 · 말레이시아 · 미얀마연방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싱가포르공화국 · 인도네시아공화국 · 일본 · 중국 · 캄보디아왕국 · 태국왕국 · 필리핀공화국 · 호주)

RCEP은 기 발효 협정 보다 원산지 기준이 외형상 완화되었으나 관세 차별 등의 새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RCEP 활용의 이점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원산지 기준

### 가) 기 발효 협정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완화

RCEP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이하 PSR)은 부가가치기준 등의 결합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PSR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40% 이상의 충족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기존에 발효된 아세안이나 중국 등과의 협정에서 규정한 다양한 부가가치비율(35%~60%)에 비해 단순하다.

PSR 중 1,587개 품목(30%)은 단일 세번변경기준이고 3,415개 품목(66%)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으로 전체의 96%가 세번변경기준이다. 나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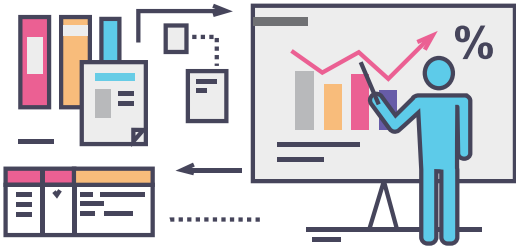
4%는 완전생산기준 164개 품목(3%) 부가가치기준 39개 품목(1%)이다.

세번변경기준은 CC 1,388개, CTH 2,962개, CTSH 650개로서, 아세안<sup>5)</sup>이나 중국<sup>6)</sup>과의 협정에 비해 CTH가 줄어든 반면 CTSH 기준이 늘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었



5) 한-아세안 FTA PSR CC 545개, CTH 4,122개, CTSH 81개

6) 한-중국 FTA PSR CC 690개, CTH 3,170개, CTSH 378개



## 나) 관세 차별

으며, 아세안이나 중국과의 협정에서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인 제02류~제14류 PSR이 RCEP은 상당부분이 CC 기준으로 대폭 완화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품목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된 것은 관련 품목의 협정국간 이동에 따른 원산지 기준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제29류와 제38류 극히 일부(8개<sup>8)</sup>)에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CR(화학반응<sup>9)</sup>)’ 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CTH 또는 RVC 40%, CR 중 하나만 선택하여도 충족되도록 하고 있다.

기 발효 협정에서 규정한 바 없는 관세 차별 (Tariff Differentials) 조항<sup>10)</sup>은 각국에서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추가한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99개 품목에 대하여 일반 원산지 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추가하여 관세 차별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 차별의 대상은 RCEP 협정의 부속서 관세 양허표<sup>11)</sup>에 명기된 상품이 계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경우이며, RCEP 협정의 3가지 원산지 기준과 더불어 협정에서 규정한 최소 공정 가공<sup>12)</sup>요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협정의 부록의 추가요건이 충족되어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관세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이 역내 생산 기준의 최소 가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출국에서 생산 공정을 수행되지

7) 그렇다고 제02류~14류에 대한 완전한 세번변경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각 협정국은 관세 차별(민감) 품목을 협정에 지정하고, 동 품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8) HS 29.01, 29.02, 29.07, 29.09, 29.14, 29.16.15, 29.20, 38.11, 38.24 이상 8개 품목

9) 화학반응(CR; Chemical Reaction)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공정으로 화학반응이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경우, 그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물 또는 그 밖의 용체에 용해되는 것’, ‘용매수를 포함한 용제의 제거’,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는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RCEP 제2.6조 (관세 차별) 및 3.14조 (특정 상품의 취급)

11) RCEP 제3장 부속서 3-가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7.

12) RCEP 제3.6조 각호

못했거나, 협정의 부속서 부록에 명시된 상품임에도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한 재료의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로 인정되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 당사자는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관세율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하거나, 수입 당사국이 여타의 당사국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최고 관세율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 차별 품목에 대하여 RCEP 관세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 중 99개 품목을

협정의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7개 품목은 발효 1년차부터 계속 관세 차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2개 품목은 발효 1년차부터 19년차까지만 관세 차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수출되는 관세 차별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건으로 협정의 부가가치 산정 기준<sup>13)</sup>에 따라 계산된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 이상이 추가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변형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20% 이상이 충족되었음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3) RCEP 제3.5조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6.

반면, 한국에서 완성품을 공급받아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및 아세안 일부 국가 등의 관세 차별 품목에 대한 추가 요건<sup>14)</sup>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하여야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다.

#### 다) 원산지 누적

RCEP 협정의 원산지 기준은 기 발효 협정과 같이 완전 생산 기준과 역내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구분되나, RCEP 협정의 최대 장점은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주요 생산 거점을 역내로 아우르는 협정으로,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적용 가능한 역내 생산 기준과 재료 누적 조항<sup>15)</sup>만으로도 역내

교역의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누적 등 누적 적용의 확대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누적 조항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 국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검토는 5년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sup>16)</sup>

이에 따라 RCEP 협정의 주요 비역내국인 미국과 EU 등지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RCEP 협정국에 경유 수출을 추진하는 비역내국의 수출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 RCEP 부록 1.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의 경우만 관세 차별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요건은 동일하게 부가가치 20% 이상 충족 여부이나 관세 차별 품목은 각국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국에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15) RCEP 제3.4조 제1항

16) RCEP 제3.4조 제2항

### 3. 맺음말

RCEP 협정은 세계적인 주요 생산 거점이자 생산 자원의 보고인 한국과 아세안 및 호주, 중국, 일본 등을 역내로 아우르는 협정으로, 기존의 협정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단순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역내 생산 기준과 재료 누적 조항 등으로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각 협정국별 기 체결된 협정의 활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원산지 기준의 완화가 모든 산업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플랜지(7307.91)와 여과기(8421.29)는 한-아세안 FTA와 RCEP 모두 RSR을 CTH 또는 RVC4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군에서는 완제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이윤 또한 10%에 못미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RCEP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제62류(편물을 제외한 의류)는 기 발효 협정보다 강화된 CC기준을 단일기준으로 하고 있어 RVC 또한 선택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중국 및 아세안, 베트남과의 협정보다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제72류(철강), 제84류(기계류)와 제85류(전자기기)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CTSH→CTH or RVC40 등으로 PSR을 강화하거나 적용제외세번을 새로이 규정한 것을 볼 수 있으며, HS 제1류~제14류를 제외한 품목 중 특이하게 완전 생산기준<sup>17)</sup>을 적용한 품목도 있다.

한편, PSR의 완화 내지는 특혜관세활용의 용이는 수입의 증가를 초래한다. 수출업체의 원산지 기준의 충족이 기존의 협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동일한 수입 품목의 특혜관세혜택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조정 측면 등에서 유의해야 한다.

17) HS 제1류~제14류를 제외한 품목 중 PSR이 완전생산기준인 품목은 1511.10, 1513.21, 1513.29, 1701.13, 1701.14, 2710.91, 2710.99, 3006.92, 38.25, 47.07, 71.12, 8548.10으로, 이 가운데 2710.91, 2710.99, 3006.92는 다른 협정과 달리 새롭게 WO가 적용된 품목이며, 나머지는 다른 기 체결 협정과 달리 예외적으로 WO를 적용한 한-중 FTA의 PSR을 따르고 있다.



ETAT  
REPORT





# FTA ANALYSIS



## RCEP 발효 시 ASEAN 국가와의 교역 효과 분석

김진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 RCEP으로 기대되는 일본 FTA 체결동향 및 통상환경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 RCEP 발효 시 ASEAN 국가와의 교역 효과 분석



김진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ASEAN은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이끌어갈 열쇠이다. 한국, 중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의 15개국이 참여한 RCEP이 발효하게 된 것도 ASEAN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은 생산기지 역할만 했던 ASEAN이 국민 소득의 증가로 중국을 이어 우리나라의 제2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은 1,088억 달러로 對RCEP국 수출인 3,291억 달러의 약 1/3 수준이다.

RCEP은 원산지 규정 통일, 누적 규정 활용 등으로 인하여 아세안과 한·중·일의 역내 무역 공급망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SEAN 시장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ASEAN의 성장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 ASEAN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은 2022.2.1일 국내에서 발효하였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의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이다.

RCEP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에 포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RCEP 국가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31.9%인 5.6조 달러이며, 명목 GDP 비중은 30.8%, 인구 비중은 29.7%에 달한다.

ASEAN은 RCEP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ASEAN은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은 1,088억 달러로 對RCEP국 수출인 3,291억 달러의 약 1/3 수준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었지만, 산업 고도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미·중 갈등이 무역과 투자에 변화를 일으키며 ASEAN이 새로운 투자 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ASEAN의 구매력 증가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對ASEAN 수출 시장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RCEP이 발효 되면서 ASEAN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개방한 지역이다.

〈표 1〉 RCEP 국가의 전 세계 비중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규모(조달러)	비중	규모(조달러)	비중	규모(억명)	비중
RCEP	5.6	31.9%	26.1	30.8%	22.7	29.7%
전세계	17.5	100%	84.5	100%	76.4	100%

주: 2020년 기준  
출처: IMF, 관계부처합동(2021.10)

평균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필리핀이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개방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금액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개방한 국가 1위는 싱가포르이다. 그 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순이다.

RCEP으로 인해 개방되는 수출유망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섬유, 장신구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방한 수입 유망품목은 농수산식품, 중간재 등이 있다.



## 1. ASEAN의 FTA 현황

개별 국가 FTA가 아닌, 협의체로서 ASEAN은 2005년 중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꾸준히 FTA를 맺어왔다.

〈표 2〉에 나와 있듯이 ASEAN은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FTA를 맺었다.

따라서 ASEAN에게 RCEP은 최초 FTA만큼은 효과적이진 않겠지만, RCEP에서 기존 FTA의 양허를 확대하였고, 원산지

규정완화, 누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메가 FTA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중 우리나라와 맺은 FTA인 한-ASEAN FTA는 2007.6.1일에 발효하였다.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ASEAN FTA의 특이사항으로는 상호대응 세율제도가 있다.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은 일일이 따로 찾아 봐야 하고 개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수출업체 입장에서 FTA 활용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를 상대하므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고 증명서 발급절차가 엄격하여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ASEAN 국가가 다양하여 개별 협상이 어려우므로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와의 FTA도 같이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싱가포르와, 2015년 베트남과 양자 FTA를 다시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메가 FTA인 RCEP과 개별 FTA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관세 혜택이나 누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ASEAN의 FTA 현황

FTA	발효 일자
중국-ASEAN FTA	2005.7.20
한-ASEAN FTA	2007. 6.1
일본-ASEAN FTA	2008.12.1
호주-뉴질랜드-ASEAN FTA	2009. 7.1
인도-ASEAN FTA	2010. 1.1
RCEP	2022. 2.1

출처: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ASEAN 국가 RCEP 추가 관세철폐 수준

RCEP을 통해 ASEAN은 금액 기준 추가 철폐율이 최대 33.4%에 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15.3%를 개방하였다.

이에 ASEAN의 최종 관세 철폐율은 89.3~100%(라오스, 캄보디아 제외)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최종 관세 철폐율도 89.7~99.9%에 달하게 되었다.

금액 기준으로 RCEP 협정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추가 양허한 국가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33.4%(2012~2013년 평균)인 16억3,700만 달러 가치의 품목을 우리나라에 추가로 양허하였다.

이는 2위인 태국보다도 2배 넘는 금액인데, 한-ASEAN FTA에서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양허한 품목이 약 59%(2012~2013년 평균)로 높지 않았던 이유에 기인한다.

평균 금액 기준으로 RCEP 협정에서 우리나라에 추가 양허한 2위 국가는 태국(\$8억 400만)이며, 이후 베트남(\$6억 5,100만), 인도네시아(\$4억 5,800만), 말레이시아(\$3억 9,000만) 순이다.

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RCEP에서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양허한 국가는 필리핀이 33.4%로 1위를 차지하며, 2위는 캄보디아(27.7%), 3위는 라오스(20.7%)이다.



RCEP에서 우리나라가 ASEAN 국가에 양허한 품목의 평균 수입금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15억 3,400만 달러 (2012~2013년 평균)의 품목을 개방하였으며 비중은 15.3%로 가장 높다.

금액 기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추가 개방한 국가 2위는 말레이시아(\$14억 3,900만)이며, 이후는 인도네시아(\$6억 6,000만), 태국(\$2억 9,000만), 필리핀(\$7,600만) 순이다.

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RCEP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양허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15.3%로 1위를 차지하며, 2위는 말레이시아(13.8%), 3위는 캄보디아(11.3%)이다.

ASEAN 국가가 우리나라에 최종적으로 양허한 품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우리나라에 100% 양허하였다.

3위는 미얀마(99.1%)이며, 4위는 베트남 (94.5%), 5위는 필리핀(92.4%)이다.

〈표 3〉 RCEP의 추가 관세 철폐 품목 평균 금액

우리나라 수출 물품 관세 철폐금액				우리나라 수입 물품 관세 철폐금액			
순번	국가	추가 관세 철폐 금액 <sup>1)</sup> (백만 달러)	비중	순번	국가	추가 관세 철폐 금액 <sup>1)</sup> (백만 달러)	비중
1	필리핀	1,637	(33.4%)	1	싱가포르	1,534	(15.3%)
2	태국	804	(8.9%)	2	말레이시아	1439	(13.8%)
3	베트남	651	(3.6%)	3	인도네시아	660	(4.6%)
4	인도네시아	458	(3.9%)	4	태국	290	(5.5%)
5	말레이시아	390	(4.0%)	5	필리핀	76	(2.2%)
6	캄보디아	174	(27.7%)	6	캄보디아	15	(11.3%)
7	미얀마	37	(5.5%)	7	미얀마	15	(3.6%)
8	브루나이	14	(7%)	8	베트남	5	(0.1%)
9	라오스	11	(20.7%)	9	라오스	0.5	(4.4%)
10	싱가포르	0	(0%)	10	브루나이	0.000044	(0.00%)

주: 2012~2013년의 평균금액

출처: 외교통일위원회,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 (2021)



ASEAN 국가는 우리나라에 51.4%~100%의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인도네시아(98.6%), 3위는 라오스(98.2%)이다.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금액을 살펴보면 브루나이(99.9%)가 1위이며, 2위는

우리나라는 ASEAN 국가에 89.7% ~ 99.9%의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표 4〉 RCEP 협정 이후 최종 관세 철폐 수준

우리나라 수출 물품 관세 철폐금액			우리나라 수입 물품 관세 철폐금액		
1	싱가포르	100.0%	1	브루나이	99.9%
2	브루나이	100.0%	2	인도네시아	98.6%
3	미얀마	99.1%	3	라오스	98.2%
4	베트남	94.5%	4	싱가포르	98.0%
5	필리핀	92.4%	5	말레이시아	96.0%
9	말레이시아	91.4%	9	베트남	95.4%
7	인도네시아	89.7%	7	캄보디아	94.2%
8	태국	89.3%	8	미얀마	93.8%
9	캄보디아	69.0%	9	필리핀	90.0%
10	라오스	51.4%	10	태국	89.7%

주: 2012~2013년의 평균금액

출처: 외교통일위원회,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 (2021)

### 3. 對ASEAN 수출 유망품목

RCEP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 시장은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주요 수출 분야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주 수출 분야인 자동차 부품, 섬유, 장신구 등의 관세도 철폐되었다.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 양허한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RCEP이 발효되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 중 주요 품목은 과일,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이 있다.

인삼, 배, 버섯, 사과, 감, 포도 등의 과일 및 채소가 관세 5%였으나 즉시 없어질 예정

이며, 파인애플, 딸기는 5%에서 10년간 철폐될 예정이다. 자동차부품도 10%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철강용기(8-15%), 형강(7.5%), 합성수지(5-10%), 의료용품(5%) 또한 관세 철폐 대상이다. 말레이시아가 RCEP에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무선통신기기부품(5%), 승용차(10~35%), 이륜차(5~30%), 기타자동차(24~30%)가 15년 간 철폐될 예정이며, 자동차 부품(5%), 이륜차부품(25%) 등이 10년 철폐될 예정이다.

철강제품(5%), 철강관(20%)도 추가적으로 관세가 0%가 될 예정이다.



필리핀이 RCEP에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기타 석유화학 제품(1%), 합성수지(3%), 열대과일(10%), 참치(5%) 등이 즉시 철폐 예정이며, 폴리에스터 섬유(10%), 알루미늄 제품(15%), 철강관(7%), 철강선(7%) 등은 15년 철폐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1~10%), 화물자동차(1~30%), 이륜차(1%), 기타자동차(1%) 등도 관세철폐 대상이다.

태국이 RCEP에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관세 철폐한 품목은 아래와 같다.

휘발유(10%), 기타석유화학제품(5%), 베어링(1%), 딸기(40%), 주류(60%), 인조 섬유(5%), 화물자동차(40%), 섬유(20%) 등이 즉시 철폐 예정이다.

또한 대구(5%), 명태(5%), 계(5%), 가자미(30%), 공기조절기(1%), 원동기(10%) 등은 10년 간 사라질 예정이다.

냉장고(30%), 화물자동차(40%), 전기 다리미(20%), 자전거 부품(10%), 자전거(30%) 등은 15년 간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 4. 對ASEAN 수입 유망품목

RCEP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도 확대되었다. RCEP에서 우리는 주로 농수산물, 중간재 등을 개방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참치(10%) 등의 농수산물과 중유(3%), 세정위생

용품(6.5%), 합성수지(6.5-8%), 정밀화학 제품(6.5-8%), 질소비료(2-6.5%), 자동차 부품(8%) 등이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양허한 품목들이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 중 주요 품목은 농수산물, 자동차 부품, 합판 등이 있다.

키위는 관세율 45%에서 0%가 되고,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이 8%에서 즉시 0%가 된다.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등이 30%에서 10년 간 사라질 예정이며, 김(20%), 자동차부품(8%), 합판(8%)도 10년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은 키위(45%),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8%), 기타석유제품(5~6.5%) 등이 있다.

또한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등이 30%에서 10년간 사라질 예정이며, 김도 20%에서 10년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은 키위(45%), 커피 조제품(8%),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8%) 등이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8%), 김(20%) 등이 10년 간 없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싱가포르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은 증유(3%), 윤활유(7%), 기타 석유제품(5%) 등이 있으며, 모두 관세가 0%가 될 예정이다.

합성수지(6.5%), 오리고기(18%), 기타 낙농품(49.5%) 등은 15년 철폐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태국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은 다른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커피(3%), 키위(45%), 증유(3%), 윤활유(7%),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8%), 화물차(10%), 이륜차(8%) 등이 있으며, 바로 0%가 될 예정이다.

김(20%), 식물성유지(5%), 합판(8%), 자동차 부품(8%) 등은 10년 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추가적으로 양허한 물품은 김(20%), 식물성유지(5%), 두류(27%) 등이 있으며, 이들은 10년 철폐 예정이다.

합판(8~10%), 오리고기(18%), 기타수산물 가공품(20%) 등은 15년 간 관세가 0%가 될 예정이다.

## 5. 결론

ASEAN은 신남방정책의 중심이 될만큼 우리나라와 점진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ASEAN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이미 우리나라의 제2대 수출 시장일만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0년 ASEAN은 처음으로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을만큼 아시아 시장의 역내 무역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있다.

RCEP의 발효는 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은 원산지 규정 통일, 누적 규정 활용 등으로 인하여 아세안과 한·중·일의 역내 무역 공급망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SEAN 시장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ASEAN의 성장에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1), 'RCEP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일위원회(2021),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부, RCEP 홈페이지, (<https://www.fta.go.kr/rcep/apply/2/>)

# RCEP으로 기대되는 일본 FTA 체결동향 및 통상환경<sup>1)</sup>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RCEP이 2월 발효되어 우리나라에 있어 일본과의 첫 FTA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의 이러한 통상정책의 흐름을 읽어 품목을 선정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한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① 일본의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② 일본 통관 제도 및 통상환경, ③ 일본 FTA·EPA, ④ 일본의 비관세 장벽 및 수출제한 조치, ⑤ 일본의 통상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RCEP으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 다음 내용은 「신규 협정 체결국 FTA 활용절차(제도) 및 통관편람 E-BOOK 제작 (일본편)」, 국제원산지정보원(2020)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 1. 일본의 시장환경 및 소비특성

일본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G7국 중 하나이며, 일본의 경제 동향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산업용, 소비용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세계의 무역대국으로 자동차

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물질산업, 에너지 산업이 주요산업이다.

특히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1%(연간 환산으로는 4.1%)로 3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표 1] 일본 주요 산업환경

구분		주요 내용
제조업	자동차	내수 및 중국·EU의 친환경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 기조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은 2022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전자기기	원격화 인프라(PC, 데이터센터 등) 수요가 지속되나 리스크 요인 상존
	철강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위축 및 해외 기업(한국,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응, 주요 기업은 국내 생산설비 축소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움직임 관측
ICT	5G	2020년 5G 상용화 이래 각 통신사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 IoT 원격근무 등 통신망 수요 확대에 따라 10년간 규모 6배 성장 예상
	스마트시티	IoT, AI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주요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노력
	원격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무·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의 원격화 니즈 확대, 서버·PC 등 하드웨어와 함께 원격화 및 업무전자화 등 소프트웨어 수요 급증
소비재	식품	일본 식품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식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택소비 증가로 수요 변동 폭은 적은 상황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리스크는 존재
	화장품	관광객 감소·외출 자제로 소비 급감, D2C(Direct to Customer) 방식으로 고객 접근 강화
	패션·의류	코로나19로 인한 큰 타격, 판매방식 다변화 통한 활로 개척 추진

자료 : 2021 권역별 진출전략(일본)/KOTRA



2021년의 일본 사회의 주요 이슈는(정치·경제 분야)로는 1월 일본과 영국의 EPA가 발효하였고, 3월은 2021년 일본 정부의 예산이 통과하였는데, 106조엔이며 이는 9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이다.

10월의 경우 10월 1일부로 일본에 긴급 사태가 전면 해제되었다.

일본 주요 산업 환경은 제조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으로 회복세는 더딜것을 전망된다.

또한, ICT 분야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생활 전반의 디지털화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재는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소비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2. 일본 통관제도 및 통상환경

일본의 관세 및 통관 관련 행정업무는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MOF)의 하위기관인 내부부국 산하 '관세국'과 지방지분부국 산하 '세관'이 주관하고 있다.

재무성 내부부국 하위기관인 관세국은 관세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운영하며, 관세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한 간접세 징수도 담당한다.

일본과 같이 관세국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세관은 관세국 산하에 위치하며, 관세 행정의 집행에 있어 현장 세관의 재량이 큰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일본 세관은 수입물품과 관련한 세금인 관세 부터 부가세(VAT)·소비세 등의 기타 간접세 까지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기타 간접세의 집행 기능 역시 지역세관에서 담당한다.

[표 2] 일본의 통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관세법	부과·징수, 수출입 물품의 세관절차, 벌칙, 범칙사건의 조사, 처분
관세정률법	관세율,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관세감면, 면세, 환급, 부당염매방지관세·긴급관세, 상계관세·보복관세·대항관세
관세잠정조치법	일시적·잠정적인 관세율의 특례 규정(특혜, 긴급 관세), 잠정세율, 관세할당, 특별긴급관세, 관세긴급조치, 개도국특혜관세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세관절차의 전자통관, 통관 정보처리센터 조직·운영



일본의 관세법률은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등 4개의 법률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등 3개의 법률에서 규정한다.

이 중 관세 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9자리의 품목분류체계를 운영하며, 관세는 최종 9자리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표 3] 일본의 품목분류체계

통계 코드		설명
HS code		
33.01		Essential oils (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 :
3301.12	000	Of orange
3301.13	000	Of lemon
3301.19		Other
	100	1 Of bergamot
		2 Other
	210	- Of lime

자료: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1\\_4/data/e\\_33.htm](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1_4/data/e_33.htm)

일본 관세율의 종류는 일본 실행관세율표(実行関税率表)를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잠정세율·WTO협정세율·특혜세율(GSP)·특별특혜세율(LDC)·협정세율(EPA, TA)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실행관세율표(実行関税率表)에 표기된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한 일본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4] 일본의 관세율 종류

구분	의미	
1	기본관세율 (General Rate)	일본 국내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가격차 등 필요한 보호수준을 고려해 설정된 세율
2	잠정세율 (Temporary Rate)	특정물품에 대해 정책상 필요 등의 근거로 기본관세율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기본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3	WTO협정세율 (WTO Preferential Tariff)	최혜국조치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4	일반특혜세율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도국 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우대조치로, 무차별·비호혜적 성격의 특혜관세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호혜적인 특혜관세와 구별됨
5	특별특혜세율 (Least Developed Country)	특혜 관세 중에서도 후발개도국(LDC)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
6	EPA, FTA 등 협정세율 (Tariff)	일본과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일반 관세보다 저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자료 : KOTRA, TradeNavi, 일본세관

일본 관세율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택하고 있으나, 종량세와 종가세 및 종량세의 혼합형인 혼합세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개별 세율을 잘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일본 관세율의 형태

구분	의미	
1	종가세율 (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2	종량세율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종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율
3	혼합세율 (Compound duty)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하여 부과하는 세율

자료: TradeNavi; 일본 관세제도, 과채류공동수출연구사업단; 일본세관

### 3. 일본 FTA·EPA

일본은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FTA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정부기관 외무성에서도 최근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는 FTA가 많아져 FTA와 EPA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6참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은 21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 FTA·EP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일본 FTA·EPA 활용 절차」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면 되며, FTA·EPA는 각 협정마다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협정별로 상세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 ①부터 ④까지의 절차는 거의 모든 FTA·EPA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각 기업 실무자들은 위 절차를 숙지하여 모든 FTA 활용 시 적용할 수 있다.(표 7참조)



[표 6] 일본의 EPA 체결현황

체결 및 발효 FTA	일-본 싱가포르(2002년), 일-본-멕시코(2005년), 일-본-말레이시아(2006년)
	일-본-칠레 (2007년), 일-본-태국(2007년), 일-본-인도네시아(2008년)
	일-본-브루나이(2008년), 일-본-ASEAN(2008년), 일-본-필리핀(2008년)
	일-본-스위스(2009년), 일-본-베트남(2009년), 일-본-인도(2011년)
	일-본-페루(2012년), 일-본-호주(2015년), 일-본-몽골(2016년)
	TPP12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2017년 일본 체결)
	일-본-EU EPA(2019년), 일-본-미국무역협정, 일-본-미국디지털무역협정(2020년), 일-본-영국 EPA(2021년), RCEP(2022년)
협상 중	일-본-터키, 일-본-콜롬비아, 한-중-일 FTA

자료: 일본 외무성  
주: 괄호안 발효 연도

[표 7] 일본 FTA·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의 4가지 기본요건

① 특혜관세 대상	② 원산지 상품	③ 직접 운송	④ 증명 능력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 협정문(일본이 체결한 대부분 EPA부속서 1)에서 특혜관세 대외제상 또는 재협상 대상품목이 아닌, 특혜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어야 함	해당 FTA·EPA에서 규정된 물품의 원산지규정(품목별 및 일반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해당 FTA·EP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함	해당 물품이 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사본, 비가공증명서 등)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자료 : JETRO(<https://www.jetro.go.jp/>)



#### 4. 일본의 비관세장벽 및 수출제한 조치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JIS 제도, JAS 제도, PSE 마크, PSC 마크, PSTG, PSLPG 마크 등을 들 수 있다.

JIS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을 말한다.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 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PSE 마크, PSC 마크, PSTG, PSLPG 마크가 있으므로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확인한 후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일본 비관세 장벽(예시)

구분	세부설명
JIS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임</li> <li>- JIS 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함</li> <li>-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됨</li> <li>-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 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됨</li> </ul> <p>* 참고자료: 한국표준협회 JIS 획득 지원 안내 및 품목리스트 (<a href="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a>)</p>

구분	세부설명
JAS 제도	<p>-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p> <p>* 참고자료: 농림수산물 JAS 제도(<a href="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a>)</p>
PSE 마크	<p>-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2021년 4월 기준 약 450품목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지정,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구임</p> <p>- 이에 해당하는 전기 용품은 모든 전기제품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정전기용품(116개)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 기용품(341개)으로 분류됨</p> <p>* 참고자료: PSE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a href="https://www.pse-info.com/pse.html">https://www.pse-info.com/pse.html</a>)</p>
PSC 마크	<p>-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함</p> <p>- 대상품목은 특별특정제품이 아기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목욕용 온수 순환기, 라이터 등이다.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은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솥/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석유등유기, 석유 온수 보일러, 석유난로 등임</p> <p>* 참고자료: 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a href="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a>)</p>
PSTG 마크	<p>- 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온수 난방기, 가스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함</p> <p>- 대상 품목으로는 특정 가스용품(반 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와 특정 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 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가스 레인지) 등임</p> <p>* 참고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a href="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a>)</p>
PSLPG 마크	<p>-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LPG 마크를 표시해야 함</p> <p>* 참고자료: 일본경제산업성 석유화학 가스 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a href="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a>)</p>



구분	세부설명
J-MOSS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 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함</li> <li>- 대상품목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인 PC, 유닛형 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 건조기가 있음</li> <li>* 참고자료: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a href="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a>)</li> </ul>
가정용 계량기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대상품목은 체중계, 조리용 계량기임</li> <li>* 참고자료: 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 (<a href="http://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ki.html">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ki.html</a>)</li> </ul>
검정인(印), 기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음</li> <li>- 제조 시에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 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같은 효력)이 있음</li> <li>- 대상품목은 업무용 계량기, 가스미터기, 수도 계량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임</li> <li>* 참고자료: 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 (<a href="http://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a>)</li> </ul>
특정 보건용 식품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아야 함</li> <li>- 대상품목은 특정 보건용 식품(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애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효과가 있는 보건식품)</li> <li>* 참고자료: 소비자청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 (<a href="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a>)</li> </ul>

자료: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 일본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일본의 對한 수출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을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제시

하고 상세 품목을 기업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참고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확인하려면, [kosti\(https://japan.kosti.or.kr/main.do\)](https://japan.kosti.or.kr/main.do)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9] 일본 수출통제 대상 품목

구분		품목수	세부설명
전략물자	민감품목	263개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품목	857개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HS 제25~40류, 제54~59류, 제63류, 제68~93류, 제95류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무기 34개, WMD 40개)	(예) (전략물자 통제사양에 미달하는)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

자료 :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설명자료, 전략물자관리원



[그림 1]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료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KOSTI website. The top screenshot is the homepage, featuring a search bar, navigation menu, and a 'QUICK MENU' section. The bottom screenshot is a detailed view of the 'Japan Export Regulations' page, including a search bar, a list of categories, and a table of export items.

**일본 수출규제 품목조회**

검색어 입력하세요

**수출 규제 제도 및 품목 문의**  
☎ 02) 6000-6400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알려드립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정부 부처 및 관계각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QUICK MENU**

- 수출규제 품목안내
- 실명확인안내
- 명분상단
- 신고단하기 (에코제기)

**공지사항**

- 공지 화생·화학법 인허가 테스트역 대상 확... 2020-04-10
- 공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019-1549) 개... 2019-09-18
- 공지 정부 지원시책 진재안내 서비스 개시 2019-09-17
- 공지 수출 규제특약 HSK 검색기능 안내 2019-09-05
- 공지 수출 규제특약 검색기능 서비스 개시(19... 2019-08-14

**안내자료**

- 안내자료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상... 2021-11-02
- 안내자료 수출통제 Re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2019-11-28
- 안내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O&A 자료 2019-09-27
- 안내자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부지원 시책 2019-09-09
- 안내자료 이슈리포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2019-06-09

**보도자료**

- 보도자료 (산업부, 2021.11)한고자외제8차 한... 2020-03-11
- 보도자료 (산업부, 20. 3. 4)참고자료제8차 한... 2020-03-09
- 보도자료 (7기재부, 2021.7) '코로나19 대응 경... 2020-02-18
- 보도자료 (외교부, 2021.6) 한일 국장급협의(2.6)... 2020-02-07
- 보도자료 (산업부, 20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2-05

**일본제도안내**

수출 통제제도 개요

일본 금번조치 개요

반면개요

품목정보

- 품목검색
- 품목안내

ICP검색

자료실

- 제도자료
- 안내자료
- 법령자료
- 각종양식

Search 품목명 반도제

품목정보 검색은 상단에 검색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SK코드 검색은 일본 통제리스트 검색만 해당됩니다.)

☎일본 통제리스트 : 232 건    ☎감시대상 품목(CAT16,비화이트국) : 0 건    ☎캐시용 규제 대상 : 0 건    ☎일본 ICP 기업 : 86 건

**일본 통제리스트**    검색결과 엑셀다운로드    전체 엑셀다운로드

구분	참조 번호	항목	참조 번호	항목	용어	용어의미	용어의미	ECCN	통제번호	민감 품목
				"고속카메라, 영상장치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이 (0) 스트릭(break) 카메라와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 스트릭(break) 카메라로 촬영속도가 05 mm/vis를 초과하는 것						
				(-) 4000 PIXEL LL						

**감시대상 품목(CAT16, 비화이트국)** ※캐시용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    검색결과 엑셀다운로드    전체 엑셀다운로드

통제대상품목	NUCLEAR	MISSILE	BIO	CHEMICAL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https://japan.kosti.or.kr/main.do>

일본정부에서는 2019년 8월, 수출통제 지역 구분 변경 등 일본 내각에서 이루어진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① 3개 품목 개별허가 의무화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의무화(2019년 7월 4일부터 기시행), 이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한 기존 포괄 허가 효력 및 특별일관포괄허가가 금지된다.

② 수출통제 적용 지역구분 변경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내각의 수출통제 적용이 다소 완화되는 화이트 국가에 소속되었으나 2019년 8월, 일본 내각의 수출통제 지역 구분 변경으로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된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일본 수출통제 허가 방식, 중점 감시대상품목 리스트 및 일본 수출 통제 대상품목확인방법 등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기업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표 10] 일본 수출통제 지역 변화 비교

분류	각의 결정 이전		각의 결정 이후	
지역 구분	화이트국	한국 포함 27개국	그룹 A	기존 화이트국가(8.28부터 한국배제, 26개국)
			그룹 B	4대체제(WA MTCR, NSG, AG)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8.28부로 한국포함)
	비화이트국	화이트국 이외 잔여국	그룹 C	그룹 A, B, D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국
			그룹 D	수출령 별표 3의2(UN무기금수국), 별표 4(이란, 이라크, 북한)

주 : 우리나라는 각의 결정 이전/이후 별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해당



## 5. 일본의 통상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

일본의 통상정책은 디지털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서프라이 체인 관리와 기업과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하여 자원활용 및 기업간 연계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sup>2)</sup>

또한, 일본은 2030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정책 및 법 개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는 2022년에는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가지 법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2022년 4월 시행 예정)과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2022년 4월 시행 예정)이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법률로 플라스틱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3개의 R(Reuse, Reduce, Recycle) + Renewable을 포함한 자원 순환 대책을 촉진하는 법률이다.<sup>3)</sup>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은 ‘파리협정’, ‘2050 탄소중립선언’의 기본 이념을 법제화 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기업들의 구체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RCEP이 2월 발효되어 우리나라에 있어 일본과의 첫 FTA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의 이러한 통상정책의 흐름을 읽어 품목을 선정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한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RCEP으로 인해 일본과의 교역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일본 2021 통상백서로 살펴보는 일본의 통상정책(2021.07.21.)을 바탕으로 정리

3)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일본 2022년 정치·경제 캘린더 및 주목할만한 이슈정리(2022.02.15.)을 바탕으로 정리

# ETA TRADE REPORT





# FTA 품목분류



##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HS 품목분류표의 변화와 FTA 활용전략 (HS 2022 중심)

양영미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HS 품목분류표의 변화와 FTA 활용전략 (HS 2022 중심)



양영미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 1. 제4차 산업혁명은 HS 품목분류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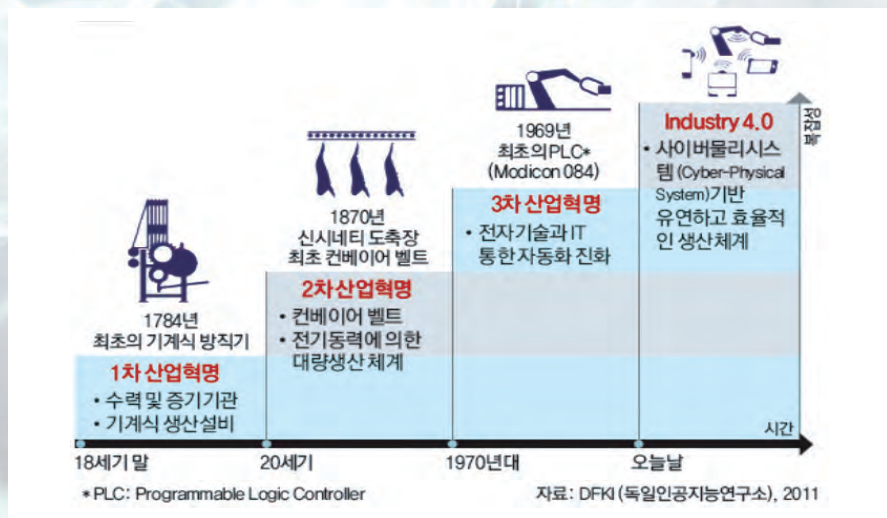
제4차 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1차 산업혁명이 ‘기계의 혁명’이라면 2차 산업 혁명은 ‘에너지(전기) 혁명’ 이었다. ‘디지털 혁명’ 시대인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작점에서 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보아 온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 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기계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HS 품목분류표상 기계는 여전히 인간의 힘든 노동을 일을 대신 하는 기계일 뿐이다.

[제 4차 산업혁명]



출처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메가스터디북스

18세기 초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식의 생산체계가 자리를 잡았고, 이어 전기에너지를 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 시기 산업혁명을 주도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비교우위로 대량 생산된 자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국가 간에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의 수단이 바로 '국제통일 상품분류표'의 제정이였다.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높은 관세 장벽 등은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있어 큰 제약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 노력은, 185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13년 제2차 상업 통계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5개 상품군(산동물, 식량과 음료, 원재료, 공산품, 금·은제품), 총 186개 상품이 담긴 통일국제상품분류표가 처음 만들어졌고 29개국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22년 국제상업통계국이 통계작성과 관세 부과 등을 위해 이 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는데 이후 1931년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부, 류, 호, 소호 체계가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부호 체계(HS)」는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와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체계 (CCCN)」를 거쳐 변화해 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시대에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들을 모아 놓은 표가 상품분류 표이므로 상품분류표의 변천사는 산업 혁명의 변천사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무선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기기 등이 품목분류표에 대거 반영된 역사를 보면 1996년(1차 개정)~2012년(5차 개정) 이였고, 최근 6차, 7차 개정에서는 나노기술인 반도체 소자(MCOs, MEMS)나 LED 모듈, 디스플레이, 인공지능의 드론·3D프린터·물류로봇, 전기차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물품의 신설이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은 무엇일까? 크게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중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주요 품목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나노기술의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산업용) 로봇, 리튬 2차 전지, 항공·우주, 첨단의료기기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신상품의 기술변화 속도를 HS 품목분류표가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HS 품목분류표는 5년을 주기로 개정되며,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간의 합의과정도 필요하고, 국제무역 거래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

다만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던 수입물품의 FTA 양허세율 적용이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 막연히 불안하다면 일단 걱정은 접어도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FTA 협정은 양 당사국 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당사국이 합의하에 수정하지 않는 이상 HS 체계 변경으로 인해 협정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말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장에서 이번 HS 2022 개정에 반영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3개 물품(3D 프린터, 무인항공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FTA 협정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짚어보기로 하겠다.



## 2. 5년 주기로 개편되는 HS 협약개정은 FTA 협정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HS 2022 개정 중심”

### 1) 첫 번째 물품, 3D 프린터인 ‘적층제조기계’ (Machines for additive manufactu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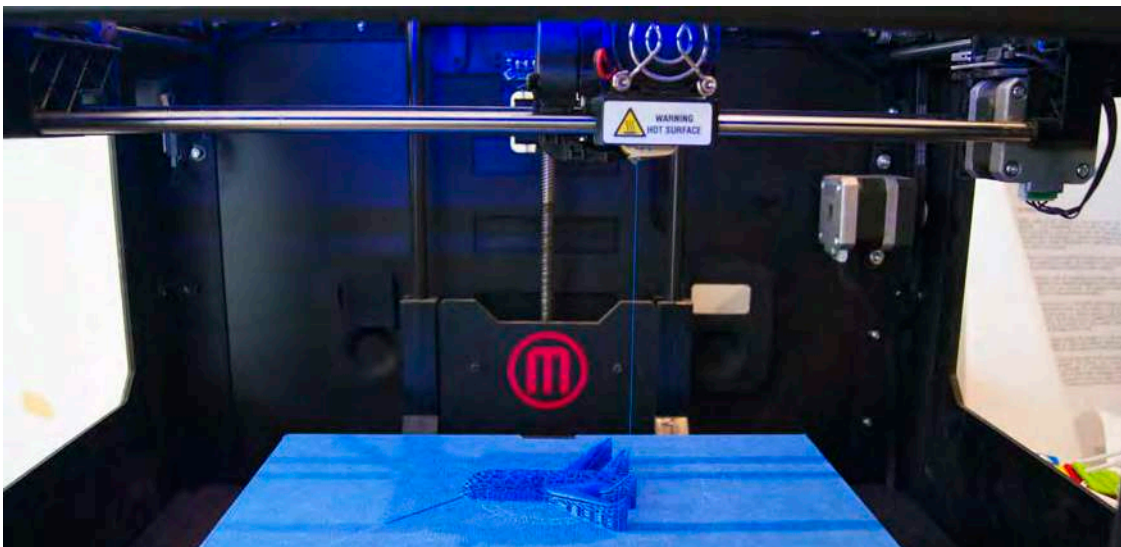
2016년 한 국내 경제연구회 포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저해하는 10가지 규제 중의 하나로 품목분류 체계의 미비를 지적한 사례가 있었다.

내용인 즉 현재 3D 프린팅 산업은 절삭, 연마에 의해 제조되는 전통적인 공작기계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제조기술이 적용됨에도 별도의 품목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신기술 융합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역시 품목분류표를 기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조업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품목분류표의 개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사실 일반적인 공작기계는 동일한 물건을 여러 번 찍어내지만 3D 프린터는 디지털에 기반하여 매번 다른 형상의 물건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변신의 기계임에도



지금까지는 품목분류상 공작기계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왔다.

여하튼 이번 2022년에는 국제기준인 제8485호에 3D 프린터가 신설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실마리는 제공해 준 셈이다.

3D 프린터의 정확한 호의 용어는 적층제조기계(Machines for additive manufacturing)이다.

“적층제조”에 대한 정의는 제84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전상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여기서 “디지털 모델”이라 함은, 쉽게 말해 CAD(Computer-Aided Design)와 같이 컴퓨터등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해 모형을 디자인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이런 방식이 아닌 사람이 손으로 모델링을 하여 모형을 만들어내는 기기(예: 3D 펜)라면, 제84류 주 제10호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8485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신설된 제8485호의 분류체계를 보면 기존 3D 프린터가 가공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6단위 소호 체계 역시 가공 재료(현재 기술상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재료)에 따라, “제8485.10호-금속용”, “제8485.20호-플라스틱·고무용”, “제8485.30호-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유리용”으로 구분하였고, 그 이외 재료 등은 제8485.80호-기타에, 제8485.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였다.

우리나라 HSK 8485.20-1000에는 유일하게 “데스크탑 형태의 재료압출 방식”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데스크탑 형태”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면 될 듯 하고, “재료압출 방식”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압출 노즐(extrusion nozzle) 안에서 필라멘트를 가열하고 녹인 재료를 적층하는 가공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3D 프린터는 필라멘트 수지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좌우로 움직여 노즐의 정확한 위치 값을 잡아주는 포지셔너와 재료가 녹아 원료가 주입되는 Feeder,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베드부분, 자이로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제8485.30-000호의 플라스틱은 석고를 말하며, 세라믹은 도자제로 의료용 인공뼈 등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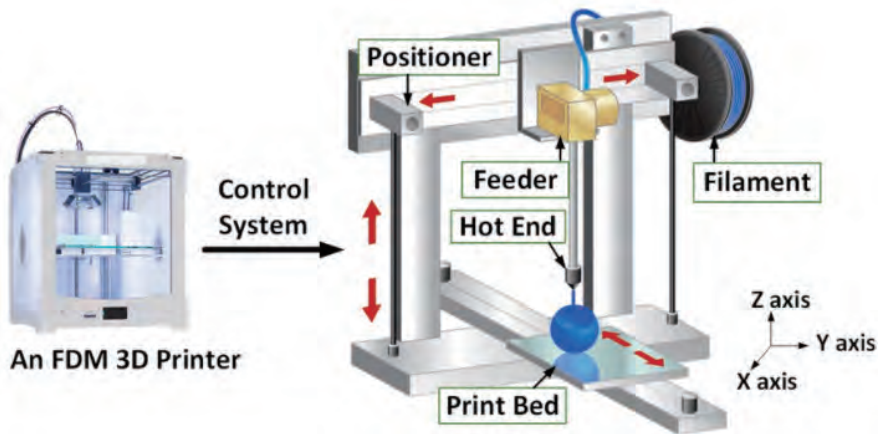
시멘트도 다를 게 없다. 컴퓨터 등을 통해 집을 설계하고, 압출 노즐을 통해 시멘트를 고압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벽과 바닥 등을 만들면 세상의 하나뿐인 나만의 집을 만들 수 있다.

제8485호 해설서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해 “다양한 목적물을 창출해 낸다(variety of objects can be created)”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제작(produce)이나 성형(molding)이라는 용어 대신 “창출(cre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현재 3D 프린터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시멘트로 집이나 금속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내는 건 물론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특정인의 얼굴을 본 뜬 3D 프린팅 마스크(가면)을 쓰고 얼굴인식 결제시스템을 속이거나 공항의 보안통제 게이트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일이 현재 기술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3D 프린터의 형태]



출처 : Supermediastore.com Andrew Montiveo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인간의 세포가 들어간 바이오 잉크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인공 근육을 만들어 냈다.

이 기술은 근육 조직 뿐만 아니라 개별 환자에 맞는 뼈나 신경조직, 심장근육, 인대 등을 인쇄하여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인공장기를 만들어 내는 3D 프린터도 신설되는 제8485호에 분류될 수 있을까? 단 참고로 현재까지 품목분류표상에는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기계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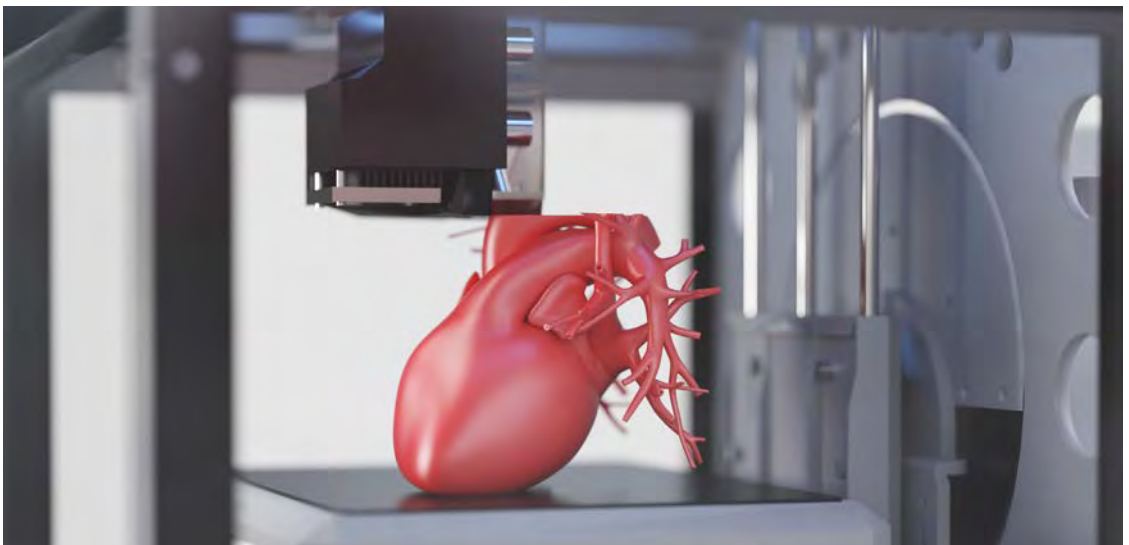
이처럼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 내는 3D 프린터는 의사 등이 치료나 수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하기에 모호하고, 그렇다고 공작기계라고 하기에 모호하다.

이 답은 신설된 제8485호 해설서 에서 찾을 수 있다. 제8485 해설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적층제조기계는 “이러한 양식으로 의료 장치, 인공장기(prosthetics), 예술품, 화기 (firearm), 건축물과 그 부분품, 의복과 부분 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목적물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HS 2022 개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3D 프린터의 진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듯 하다. 정리하면 디지털 모델에 기반해 3차원의 목적물을 창출해 내는 기기로서 제84류 주



제10호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결과물이 인체에 삽입되는 장기이든,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이든, 유명한 작가가 창조한 고귀한 예술품을 만들어내든 제8485호의 적층제조 기계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 3D 프린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제16부) 해당 호에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전용성만 있다고 모두 제8485호에 함께 분류될 수 있을까? 그 답 역시 제8485호 해설서에 있다.

제8485호 해설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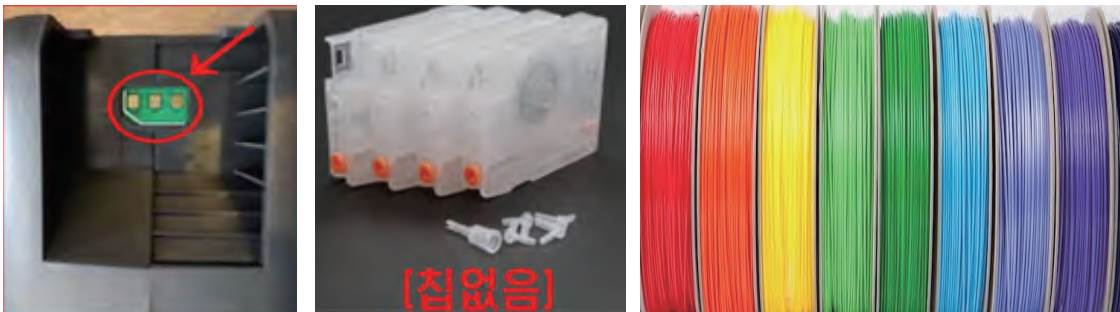
“재료를 포함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특정한 3D 프린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한된 프린터 카트리지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 부품이나 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쉽게 설명하면 위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전자칩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카트리지는 3D 프린터와 함께 제8485호에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적 칩이나 기계적 메커니즘이 없는 형태라면 전용된다 하더라도 재질 등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각각 분류해야 한다.

잉크젯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맥락과 비슷하다고 보면 쉬울 듯 하다.

[제8485호 분류되는 품목 vs. 제8485호로 분류될 수 없는 품목]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8485호의 세율 체계를 보면 기본관세는 8%이고, WTO 양허 관세는 13%이다.

다만, FTA 협정세율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21년 기준으로 판단하여 3D 프린터가 분류될 수 있었던 제8463호(금속, 서멧), 제8474호(플라스터, 세라믹, 시멘트), 제8475호(유리), 제8477호(고무, 플라스틱), 제8479호(기타 재질 또는 범용성) 등이 해당 호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일부 RCEP과 한·중 FTA(제8479호)를 제외하고는 FTA 양허세율은 대부분 0%가 적용된다.

## 2) 두 번째 물품, 드론(Dron), 무인기(Unmanned aircraft)

드론(Drone)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원격조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말하는데,

Drone이라는 명칭은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에 착안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군대에서 정찰·공격용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 실험이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드론은 이미 지난 2015년 3월 제55차 WCO HS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품목분류를 결정할 바 있다.

당시 물품은 촬영용 드론이었는데 날개체인 4개의 쿼드콥터에 소형의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경우 HS 품목분류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두 가지 기능이 융합되어 있는 경우 통칙

[드론의 예시]



출처 : (상) 팬텀3 프로페셔널=dji.com, (하) 도미노 피자 UK

제3호 나목에 따라 어디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결론은 촬영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제8525.80 호로 결정되었다.(여기서 판단은 WCO HS 위원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투표결과에 따른 다수결을 말함)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유사해 보이는 여러 형태의 드론이 본질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HS 불일치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각국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 요소나 용도에 관계없이 드론을 하나의 호에 통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최종 이번 22년 개정시 제8806호에 드론이 신설 되었다.

지금까지 편의상 용어를 드론이라고 칭했으나 관세율표상의 정확한 용어는 “무인기 (Unmanned aircraft)” 이다.

그럼 여기서 “Unmanned(무인)”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여기서 사람, “Man”은 정확하게 조종사 (Pilot)를 지칭한다. 즉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에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의미에서 “Unmanned(무인)”이다.

제88류 주 제1호에서 ‘무인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 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3D 프린터가 “디지털 모델에 기반한 것”이 핵심이라면,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에서 조종하는 것”이 분류상 핵심이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손님을 태운 드론(무인기) 역시 제8806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드론은 제8806.10호의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 외에 제8806.2-호 제8806.9-호는 “최대 이륙중량”에 따라 세분류를 하고 있는데, “최대이륙중량”에 대한 정의는 제88류 소호주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소호 제8806.21호부터 제8806.24호까지와 제8806.91호부터 제8806.94호까지에서 “최대 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의 기체(機體)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나 무인기 국가표준에서도 동일한 “최대이륙중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상 큰 이견은 없을 듯 하다.

드론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 “드론 전쟁”을 보면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류형 새처럼 생긴 드론이 나온다.

아래의 그림은 영화가 아닌 실제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 감시를 위해 정찰용으로 사용했다는 스파이 드론, ‘도브(Dove)’ 이다.

그럼, 정찰용이나 공격용(군사용) 드론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8806호에 분류될 수 있을까?

이 답 역시 제8806호 해설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스파이 드론 ‘Dove’의 내부 구조를 보면, 비행에 필요한 프로펠러를 비롯해, GPS (위성위치추적장치), 안테나, 데이터링크, 센서, 제어부 등 제8806호 해설서에서 ‘지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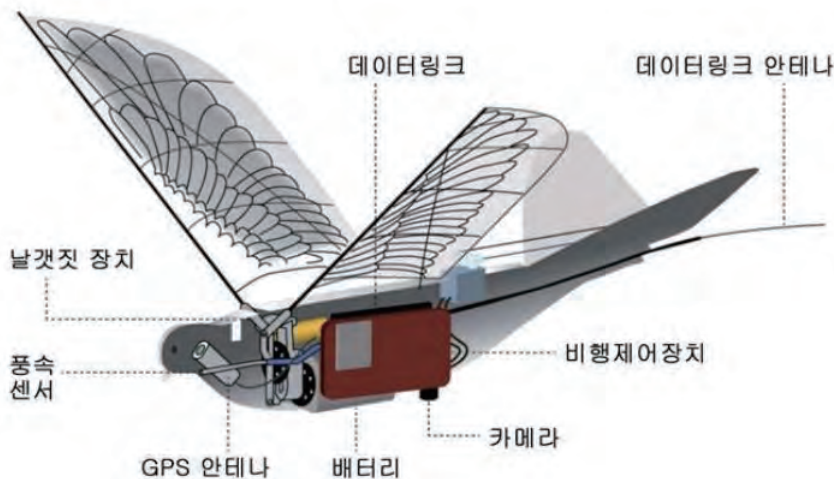
장치’ 등으로 칭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갖춘 전형적인 드론의 특성을 띠고 있다.

제8806호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무인기는 화물(payload)을 운반하거나, 영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또는 여러 실용기능(예: 화물이나 승객의 수송, 항공 촬영, 농업용·과학용 작업, 조난자 구조, 소방용, 감시용,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드론 역시 3D 프리터와 같이 미래에 응용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중국이 개발한 도브 무인기]



출처 : Uasvision.com

## [공격용 무인기]



정리하면, 군사적 목적이든 감시용 목적이든, 조난자를 구출할 목적이든 제88류 주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비행체라면 제8806호가 우선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제8806호 해설서를 보면 ‘전적으로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것’,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것’, ‘지능적 전자 장치가 없는 것’은 제8806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까지는 제8801호부터 제8805호까지 총 5개의 호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88류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개정 되었다.

이번 2022년에는 제8801호부터 제8807호까지 총 6개의 호가 존재하는데, 중간에 있던 제8803호(부분품)가 맨 마지막 호인 제8807

호로 이동하였고 제8803호는 현재 유보 상태이다.

이유는, 기존 제8801호와 제8802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던 제8803호에 이번 신설된 ‘무인기의 부분품’을 함께 포함시키고 체계상 맨 마지막인 제8807호로 이동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806호의 세율체계를 보면 제8802호와 같이 관세율표상 기본세율이 0%로 제정되었다.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을 제외하고 모든 FTA 협정과 WTO 양허관세가 0%이다.

기본세율이 0%인 경우,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하면 되므로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요건 등을 구비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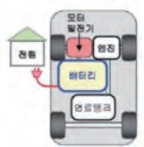

### 3) 세 번째 물품,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세번째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호 신설이다.

이미 2017년도에 자전거(제8711호)나 모터사이클(제8711호), 승용자동차(제8702호, 제8703호) 등 소형차 중심으로 3가지 형태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호 신설이 있었다.

당시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혼다의 인사이트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있던 일본은 2010년 이전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HS 국제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고, 최종 2017년 HS 개정시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

[하이브리드 v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vs. 전기차]

구분	하이브리드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EV)
구조	엔진+모터 (보조동력)  배터리는 0.9 ~ 1.8 kWh	모터로 주행 가능  배터리는 4 ~ 16 kWh	모터만으로 주행  배터리는 10 ~ 30 kWh
특징	• 주행 조건별 엔진과 모터를 조합 최적운영으로 연비 절감 도모	• 외부 전원 배터리 충전 가능 • 하이브리드차 + 전기차특성	• 내연기관 도움 없이 충전된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

출처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구동부인 엔진과 모터가 2개가 장착되어 있고, 전기차는 순수히 모터로만 구동되는 차량이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는 자동차가 출발할 때와

저속으로 운행할 때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해 둔 전기로 모터를 작동해 주행하고, 나머지 구간에선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로 전환하므로 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없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엔진과 구동모터를 모두 장착되었지만,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만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충전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엔진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보면 된다.

전기차(EV, Electric Vehicle)는 순수히 모터로만 구동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로 운행된다.

현재 급 성장중인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테슬라)과 유럽의 프랑스(르노 Zoe), 독일(폭스바겐ID.3 e-Golf, 아우디), 아시아의 중국(홍광 mini, 상하이기차 Baojun, BYD Qin Pro), 한국(현대 Kona, 기아 Niro) 등이 선점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에서는 닛산(리프) 정도 뿐이다.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번 2022년 개정은 유럽연합(EU)가 제안하였다.

전기차 시장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대형의 트랙터(제8701호)나 화물차(제8704호)에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고, 최종 HS 2022 개정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

참고로 트랙터(tractor)는 제8701호에 분류되는데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 궤도식의 차량으로 농업용이든 임업용이든 다른 차량을 견인하든 상관없다.

다만 보통 작업도구 등을 부착하기 때문에 특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쟁기나 팽이와 같은 범용성 작업 도구까지 트랙터와 함께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번 2022년 개정시 제8703호의 화물 수송용 차량에도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소호가 신설되었다.

그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호가 별도로 없었던 2017년 이전 또는 2022년 이전 “하이브리드 차량(HEV : Hybrid Electric Vehicle)”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

신상품이니 특게 호는 없고, 앞에서 본 드론과 같이 두 가지 기능이(내연기관이 엔진과 모터 2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차량을 움직이는 구동부가 ‘엔진’과 ‘모터’ 두 개로 되어 있어 2017년 기준 호의 용어가 내연기관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품목분류표로는 분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되는 통칙 제1호 외에 통칙 제2호나 제3호와 같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해서는 이미 1999.5월(제23차)과 2016.3월(제57차) 두 차례 걸쳐 WCO HS 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최종 통칙 제3호(나)에 따라 모터보다는 내연기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내연기관(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엔진)의 종류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봐도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다만, 모터로만 구동되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엔진 자체가 없으므로, 품목분류상 특별한 이견없이 제8703.90호의 “기타”로 분류된다.

2017년 그리고 2022년 두 번의 HS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기술로 거래되는 웬만한 친환경 차량의 형태는 품목분류표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분류사례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FTA 양허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상은 2017년(제8703호, 제8711호) 또는 2022년(제8701호, 제8704호) 이전에 완료되었다.

2022년 현재, 5톤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HEV, 신차)를 수입한다고 하자. 일단은 현재 관세율표에 따라 제8704.41-1010호에 신고하면 된다.

그럼 FTA 양허세율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FTA 협정이 체결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HEV, 신차)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HS

코드를 찾은 후 현재 품목분류표에 연계하여 세율을 판단하면 된다.

그럼 수입 신고시에 납세자는 FTA 세율 적용을 위해 HS 2022-2017-2012-2007-2002 연계해서 일일이 세번을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도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5년 주기로 HS 협약개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세계 관세기구(WCO)에서 공개한 'HS 연계표' 등을 참고하여 개정될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에 「FTA 양허관세율표」 품목을 연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6개〉 'FTA협정관세율표'를 말함.

그 결과를 대통령령인 FTA 특례법 시행령에 담아서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HSK 10단위 이하의 수많은 "-", "--", "---" 등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연계작업에 따른 결과이다.

5년 마다 치루는 이런 홍역은 비단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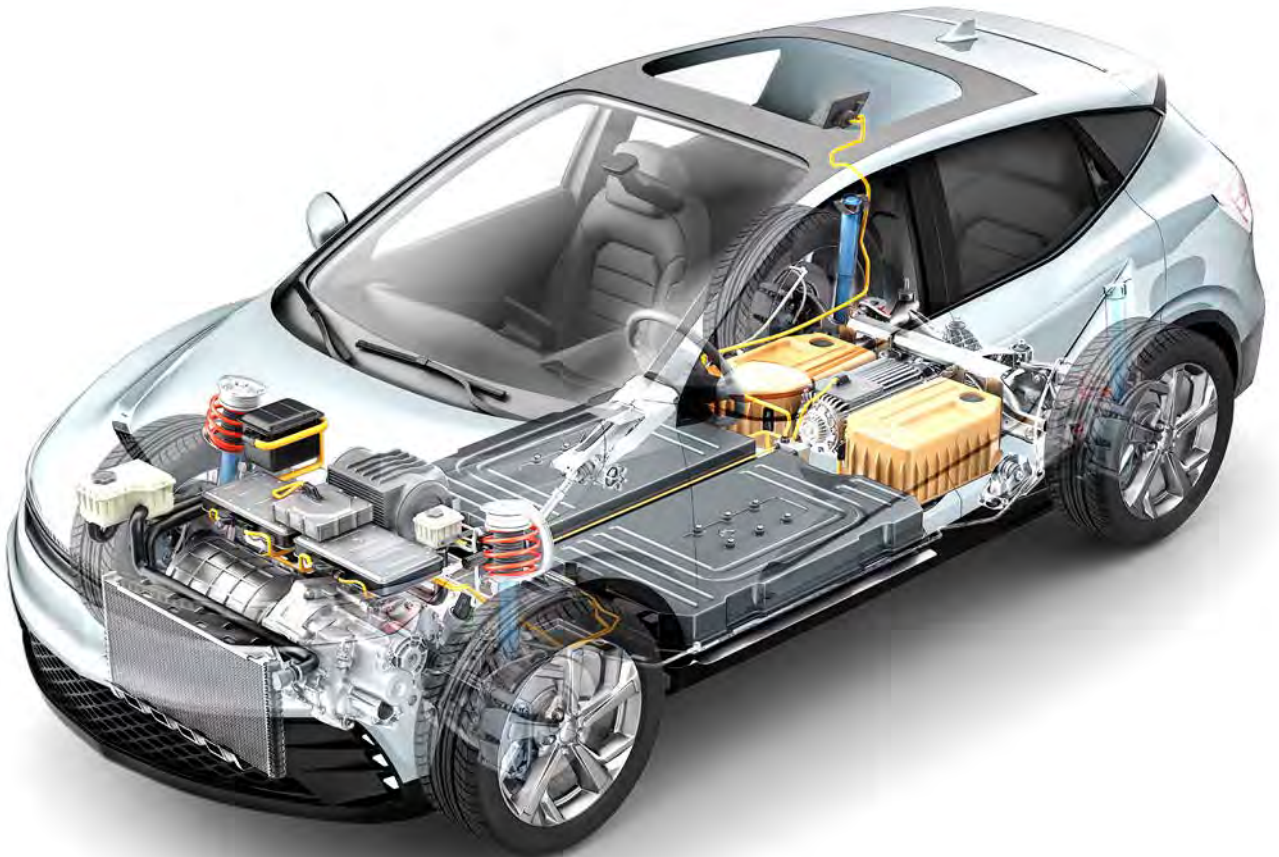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FTA 체결한 모든 나라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2019.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WCO HS(Harmonized System) 미래방향 연구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일본측 대표는 HS 개정이 크면 클수록 FTA 양허세율이나 통계부호표 연계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HS 개정 폭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민간협회나 국제기구에서는 新기술 융합물품과 국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품들이 HS 품목분류표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떤 방향이 올바른 개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각자 장단점은 있다.



### 3. 수출입기업은 HS 개정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HS 개정은 FTA 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리하면 당초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가 없었다면 HS 개정으로 인해 FTA 협상내용(예: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혹 HS 개정되고 나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하소연을 한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된 이후에 상대국에서 FTA 세율적용이 달라졌다. 분명 현행 HS 품목분류표상 A라는 세번이 맞는데, 이전에 적용받던 양허품목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관에서는 규정된 품목이 없으니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양허를 한 품목이거나 또는 개도국 등에서 종종 발생한다.

원인을 찾자면 복잡한 연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관세당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통합·삭제하였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기업은 양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간 FTA 관세위원회에 의제 등으로 상정하여 아국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정을 하려면 그 나라 역시 법을 바꿔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HS 측면에서만 본다면 WCO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는 단지 가이드 정도일 뿐 지극히 자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연계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WCO 연계표에 있는데 왜 누락되었느냐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HS 개정으로 협상당시 약속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는 법이므로, 기술적으로 어디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협상 당시의 관세율표 (예: HS 2002, HS 2012)와 분류사례(사전 심사회신 등) 등을 참조하여 쟁점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국이 타당한 범주 내에서 HS 코드를 연계한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드론이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되어 결정된 품목이라면 더욱 판단이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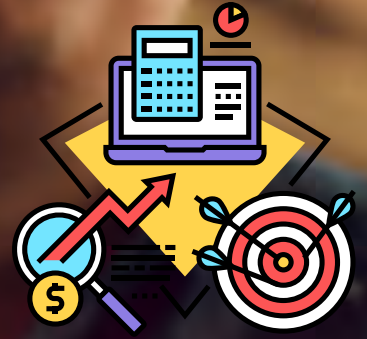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입 시점에 상대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

물론 개도국 등의 경우 원하는 기일 내 회신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품목 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다면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로상자와 같은 HS 연계표에서 길잡이인 내비게이션 (Navigation) 역할을 할 것이다.





REPORT



# 해외통관애로 >>

최근 베트남 관세 제도

김용철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관세영사



## 최근 베트남 관세 제도



김용철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관세영사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가공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생산용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수출물품을 이루는 수입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법 체계는 통관 절차에 관한 세관법과 관세에 관련된 수출입세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조·가공기업의 관심이 큰 관세의 적용과 감면, 환급 등은 수출입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종전의 수출입세법시행령 (134/2016/ND-CP)을 일부 개정하는 시행령 18호(18/2021/ND-CP)가 2021년 3월 11일에 공포되고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시행령이 기존 시행령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규정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 중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할 주요한 개정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의 면세요건과 위탁가공 면세 법제화, 내국수출입절차 및 수출가공기업의 세관 감시요건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 1. 수출용 원재료의 면세요건과 위탁가공 면세 법제화

### 가. 임가공 및 수출제조기업의 면세 요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의 면세요건은 임가공(Processing)이나 수출 제조(Manufacturing)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가공임 획득을 목적으로 임가공 위탁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생산자가 직접 자기의 계산으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후 수출하는 형태이다.

임가공의 경우에는 임가공 시설, 기계,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해야하고 임가공 시설과 임가공 계약서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조수출의 경우에도 생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해야하고 세관에 생산시설을 통보해야 하며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 나. 면세가 인정되는 아웃소싱 유형

총선 베트남 관세당국은 수출제조 기업이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한 후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 중 하나인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면세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소급하여 추징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12월 총리 결의를 통해 면세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에서 법제화 되었다.

개정 수출입시행령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공활동을 인정하여 수입세를 면제하고 있다.

즉, 원청기업이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을 통해 위탁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거나, 수입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가공하고 반제품을 돌려받아 추가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 일부를 위탁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거나, 수입 원재료 전부를 위탁가공하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

수출제조 기업의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아웃소싱 유형이 인정되나 수입원재료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자본금 또는 보통주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수출용 원재료를 면세 수입한 후 내수 시장에 판매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떡튀 기업’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이다.

## 다. 아웃소싱 절차

다른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을 받는 기업의 생산시설과 재임가공계약을 세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절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재임가공을 위한 원료나 장비를 위탁하거나 임가공이 완료되어 물품을 되돌려 받을 때에 별도의 세관절차는 불필요하지만 통관 후 검사(관세조사) 등을 위해 관련 자료는 보관하여야 한다.



비관세구역인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이나 해외에 소재한 기업에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위해 수출되는 원자재나 반제품에 대한 수출세가 면제가 된다.

다만, 가공 후 베트남으로 재반입될 때 수입세가 부과된다. 이 때 반출분에 대한 수입세는 면제가 되며 임가공비와 추가자재 및 가산요소 등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 2. 임가공 및 제조수출 물품의 내국수출입 절차 및 세무처리

내국수출입제도는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이 외국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 그 외국거래처가 지정하는 다른 베트남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영어로는 in country export, on spot export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외국과의 거래이지만 실제 물품은 베트남 국내에서 이동하며 세관에 내국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내국 수출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거래처가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에 물품 인도를 지정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내국수출자는 내국물품의 수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응하는 내국수입신고 정보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수출자가 새로운 수입신고서를 등록하고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 모두를 납부 하여야 한다.



새로운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라도 내국수입자의 신고정보를 세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내국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수입유형이 가공수입유형인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가공수입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수입세 및 부가세를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다음 물품을 해외나 비관세구역으로 수출한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내국수출입 절차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내국수입의 유형에 따라 관세 유예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유예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거래구조를 임가공 형태로 전환하거나 수입세를 선납부한 후에 환급받는 구조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수출가공기업 세관 감시요건 신설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은 비관세구역인 수출가공구역 내에 설립, 운영되는 기업 또는 산업단지 또는 경제구역 내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출가공기업은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82/2018/ND-CP)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수출가공기업은 우리나라의 보세공장과 유사한 제도인데,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나 고정자산 등에 대해 관세 유보 혜택이 부여된다.

베트남의 수출가공기업은 다른 수출가공 기업과의 거래나 국내 임가공활동을 위한 거래에 통관절차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은 수출가공기업이 관세법령이 정하는 세관 검사·감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관하여 투자등록증 발행 전에 세관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반영하여 세관감시요건 규정이 이번 수출입세법시행령 개정에서 법제화되었다.

세관 검사·감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영역과 분리된 하드펜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 게이트를 통해서만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과 물품 보관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영상은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확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재 입출고, 수입, 수출, 재고관리 데이터를 관리하고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보유하여야 한다.

하드펜스의 조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여러 사례와 향후 유권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예정이다.

최근 수출가공기업이 건물의 일부층만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경우는 각 층과 건물이 벽 등의 시설물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조건 충족 여부에 관해 사전에 관할 세관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수출가공기업 내에서 게이트와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비과세물품 및 장비 등이 보관되는 창고 등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 내의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사무실, 식당 등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출가공기업의 카메라 데이터의 세관 공유는 현재 IP 주소와 계정 및 패스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후에 세관당국과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이후에 구체적인 데이터 교환 메시지 형식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관 감시요건에 관하여 기존에 수출가공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가 된다.

기존의 수출가공기업은 세관 감시요건을 보완하여 관할 세관에 세관감시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세관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확인 문서를 발급한다.

세관감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후 계속 보완할 수 있지만 최초 확인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관세유예 등 비관세 구역에 적용되는 세무정책이 정지된다.

신규 또는 확장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등록 증명서 발급된 날로부터 비관세구역에 대한 세무정책이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세액, 연체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STATRADEREPORT





# FTA 100% 활용하기



## 메타버스의 등장과 FTA

강효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 메타버스의 등장과 FTA



강효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흔히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간 수출입에 있어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하는 약정<sup>1)</sup>이다. 이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상품거래와 서비스, 투자 등이 가능해져 더 큰 경제적 효익이 발생함은 물론 경제 통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메타버스가 디지털 신대륙으로 불리우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에서 거래, 메타버스와 FTA의 연관성과 함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1) 위키백과

## 1. 메타버스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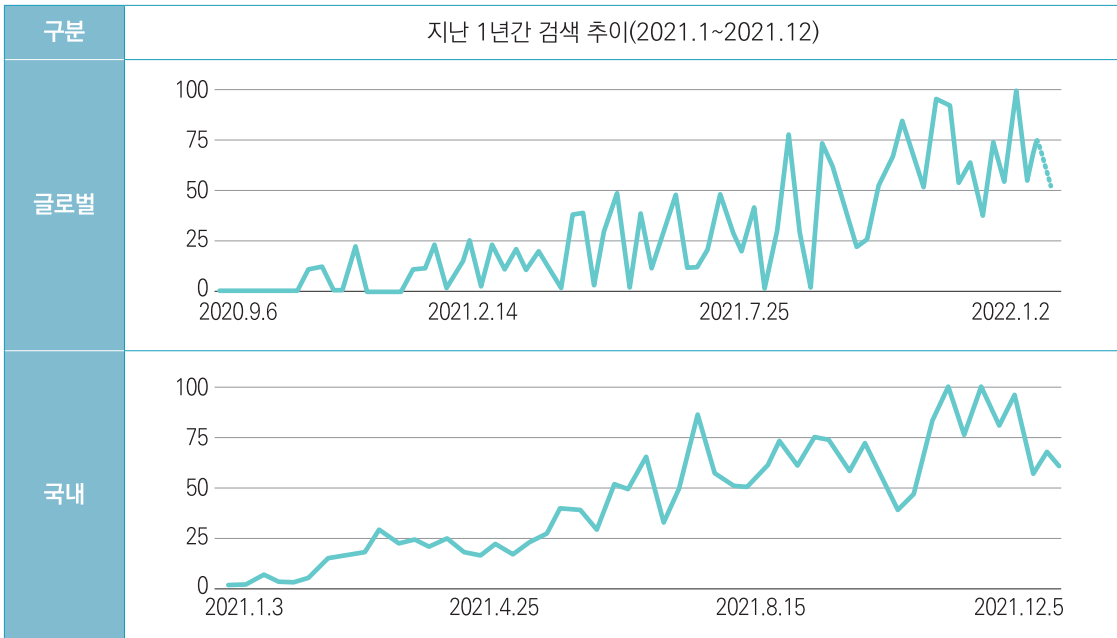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미국에서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출간한 공상과학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3차원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현실이 공존하는 제3의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위치기반기술,

가상 및 증강현실(AR·VR), 홀로그램, 컴퓨터 그래픽(CG), 빅데이터 등 다양한 ICT 기술이 발전하고 접목되면서 메타버스의 가속화 및 고도화, 다양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글로벌 기준 2021년 630.8억불에서 2026년 4천 66억 불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그림 1〉 메타버스 검색 추세



출처 : 구글트렌드

나라는 2021년 8.7억불에서 2026년 70.5억 불로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되는 등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미래의 빠른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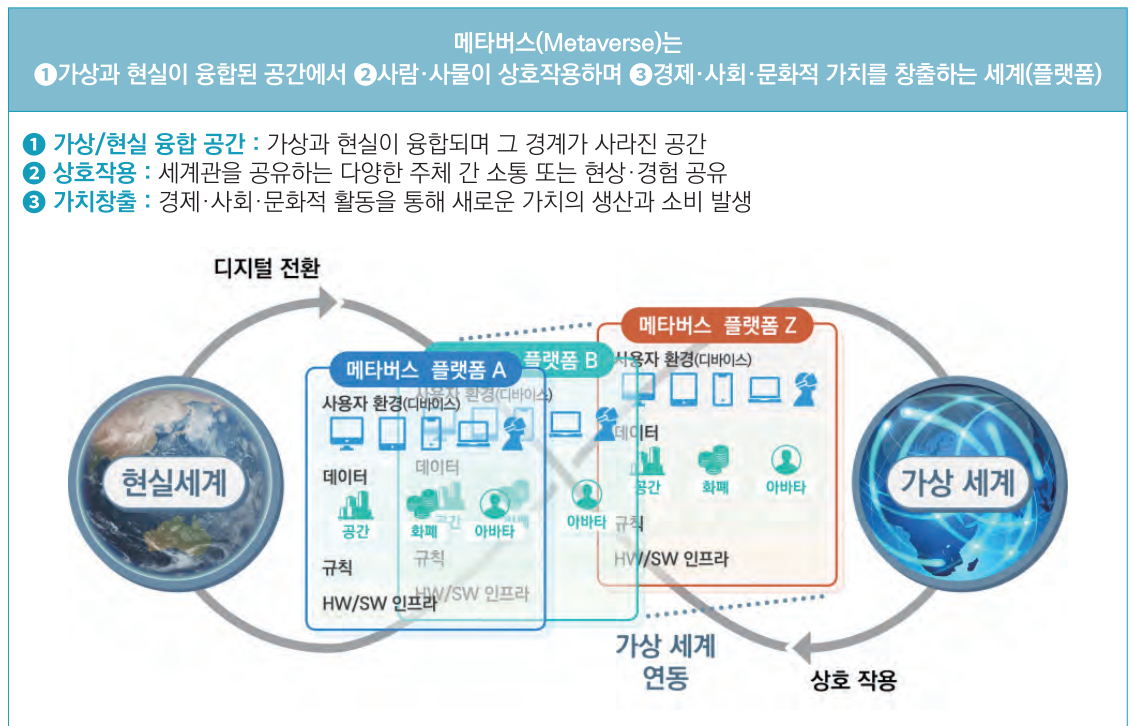
더불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관련 기업들의 IPO가 증가하는 등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왜 지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가?

메타버스의 개념은 가상세계(virtual world)의 확장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은 과거에도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휴먼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가능하게 만든 ICT 기술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그림 2〉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



출처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

메타버스가 본격화에 이른 가장 첫번째 이유는 빠른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새로운 ICT 기술의 출현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등장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통해 발전해 왔다.

최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VR·AR),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ICT기술의 발달은 메타버스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생태계가 가져올 변화를 주도하고 신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다.

둘째,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전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였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원격근무, 원격협업, 가상교육 등 비대면 환경 속에서 현실을 확장시킨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요구되었으며, 그 공간 안에서 기존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지속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입학식 및 졸업식, 신입사원 교육, 선거운동<sup>2)</sup> 등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던 활동들이 가상 공간안에서 큰 거부감 없이 우리들의 사회와 생활 공간 속으로 녹아들고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신세대 즉,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개인의 개성을 분출하는 데 익숙한 MZ 세대가 가상 공간안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생산과 소비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열렸다.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로블록스(Roblox)는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며 메타버스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 2018년 1,200만 명이던 DAU(일일이용자수)가 2021년에는

2) 미국 대통령 후보 바이든은 전세계에서 2천만개 이상 팔린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대통령 선거 활동 진행

4,800만 명으로 4배이상 증가하면서 이용자수와 콘텐츠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기업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로블록스만의 가상화폐인 로벅스(robux)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텐츠가 생산, 유통, 소비가 가능해지고, 발생한 수익이 현실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상공간과 실물 경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 메타버스 관련 게임 및 기업들도 최근 들어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포트나이트는 미국의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의 가상 라이브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의 성공 가능성을 한껏 높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게임공간(배틀로얄)이 아닌 이용자 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소셜공간(파티로얄)을 구현해냄으로써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2. 메타버스와 거래(Trade)

메타버스의 기원은 지난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IT기업 린든 랩이 만든 가상현실 사이트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컨드 라이프는 말 그대로 제2의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한 때 세컨드 라이프의 주민은 230만명을 넘어 서기도 하였고, 오늘날의 메타버스와 같이 아바타를 통해 쇼핑과 자동차, 건물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이 이곳에 지점을 개설하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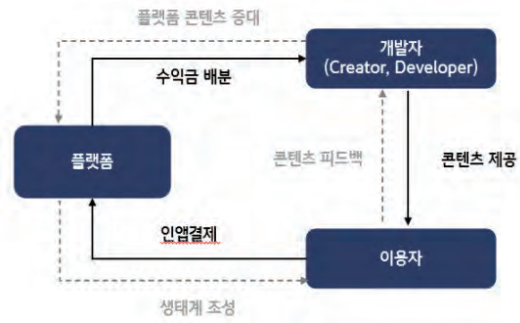
이러한 사이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부동산이었는데 실제 이 가상세계에서 부동산을 팔아 현실세계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등장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한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생태계는 크게 플랫폼과 개발자, 그리고 이용자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플랫폼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 하고 운영하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콘텐츠를 유통 및 관리하는 플레이그라운드 (play-

ground)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다음으로 개발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용자로써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한다. 끝으로 이용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한 이용자끼리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해나가면서 플랫폼이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림 3〉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



출처 : KB증권(2021.3)

개발자나 이용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분신이자 또 다른 나(digital me)인 아바타(avatar)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바타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교육·훈련, 의료, 쇼핑, 금융 등 신뢰성과 정확한 지식 전달이 필요한 경우 실사형태의

디지털 휴먼을,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재미적 요소가 중요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카툰 스타일의 아바타를 활용하는 데 이는 호감도를 높이고 uncanny valley(불편한 골짜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은 거래를 위한 화폐인데, 화폐는 시장이 형성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인증이나 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화폐는 NFT<sup>3)</sup>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며,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암호화폐마다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어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할 수 없으며 NFT가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화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한번 발행된 NFT는 제3자가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가 없고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 기록이 명시되므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속성으로 메타버스 콘텐츠에 고유성을 부여하며 희소성을 높임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실제 거래가 실행되어지는데, 디지털 상품이나 영상, 음원 등 디지털 창작물이 가치 인정을

〈그림 4〉 메타버스 아바타 유형

〈SK-II <sup>4)</sup> 〉 · 뷰티 어드바이스 제공 및 질의 응답 수행	〈LG전자 <sup>5)</sup> 〉 · CES 2021에서 LG전자 강연 발표자로 참여	〈페이스북 <sup>6)</sup> 〉 · 아바타 기반 메타버스 플 랫폼 구축	〈제페토 <sup>7)</sup> 〉 · 가입자수 2.5억명 (90%가 해외이용자)
			
〈실사형〉		〈카툰형〉	

3)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 그림, 동영상, 음악, 게임, 부동산 등 디지털 자산의 진위 판별 및 디지털 소유권 증명에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

4) 매일경제(2021.2.24)

5) 조선일보(2021.1.11)

6) 연합뉴스(2021.12.10)

7) 매일경제(2021.1.8)

받아 거래가 이뤄지고 시장(market)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듯 NFT 기반의 디지털 창작물들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아 메타버스 경제를 형성하며 가상경제의 확대로 이어진다.

실제로 희소성 있는 디지털 예술품들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활용하여 메타버스에서 가상공간이나 가상건물,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축 및 거래가 가능하며, 더 샌드박스(the sandbox)에서도 게임 내 토지인 ‘랜드’를 NFT로 거래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와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작년말 기준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부동산 거래액이 1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가상 세계 토지 거래는 높은 잠재력과 함께 대중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실세계와 같은 임대 개념이 존재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내 건물에 임대료를 내고 자신의 상점이나 전시공간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림 5〉 메타버스 디지털자산 플랫폼 사례

<p>디센트럴랜드 Decentraland</p>	<p>Cryptovoxels</p>	<p>더샌드박스 THE SANDBOX</p>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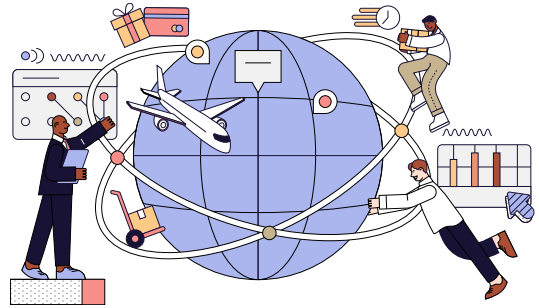
### 3. 메타버스와 FTA

그렇다면, 메타버스 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질 것인가?

흔히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간 수출입에 있어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하는 약정<sup>8)</sup>이다. 이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상품 거래와 서비스, 투자 등이 가능해져 더 큰 경제적 효익이 발생함은 물론 경제 통합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실세계에 있어 FTA가 발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결 요소는 국가일 것이다. 현재까지 트렌드를 살펴보면 멀지 않은 시기에 가상 세계 안에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국가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현실세계와 똑같이 국가간 거래와 함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FTA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2천년내 초기 페이스북이 등장했을 때 학자들은 페이스북을 근대 민족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사람이 모이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세금 징수나 자체 경제 시스템도 만드는 등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추었다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었다.

국내 한 미래학자는 가상공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선출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제도를 갖추고 활발할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은 단순한 사고 팔기가 아닌 순환경제 형태의 자체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포트나이트나 다른 게임들도 각자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NFT와 같은 가상 화폐를 통한 소비가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가간 무역과 같이 게임간에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서 마치 실물 경제와 같은 영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8) 위키백과

## 4. 결론

메타버스를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인정받는 영화인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 일상의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 현실 공간인 오아시스(OASIS)에서 뒹돈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오아시스가 출시된 해는 2025년이며 영화속 시대는 2045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빠른 IC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메타버스가 실현될 시기가 보다 빨리 도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의 무한한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욕설 등 도덕적 이슈, 가상세계 과몰입에 따른 현실 도피 문제, 플랫폼사의 과도한 이익 편취, 가상 화폐가 가지는 한계 등 메타버스 세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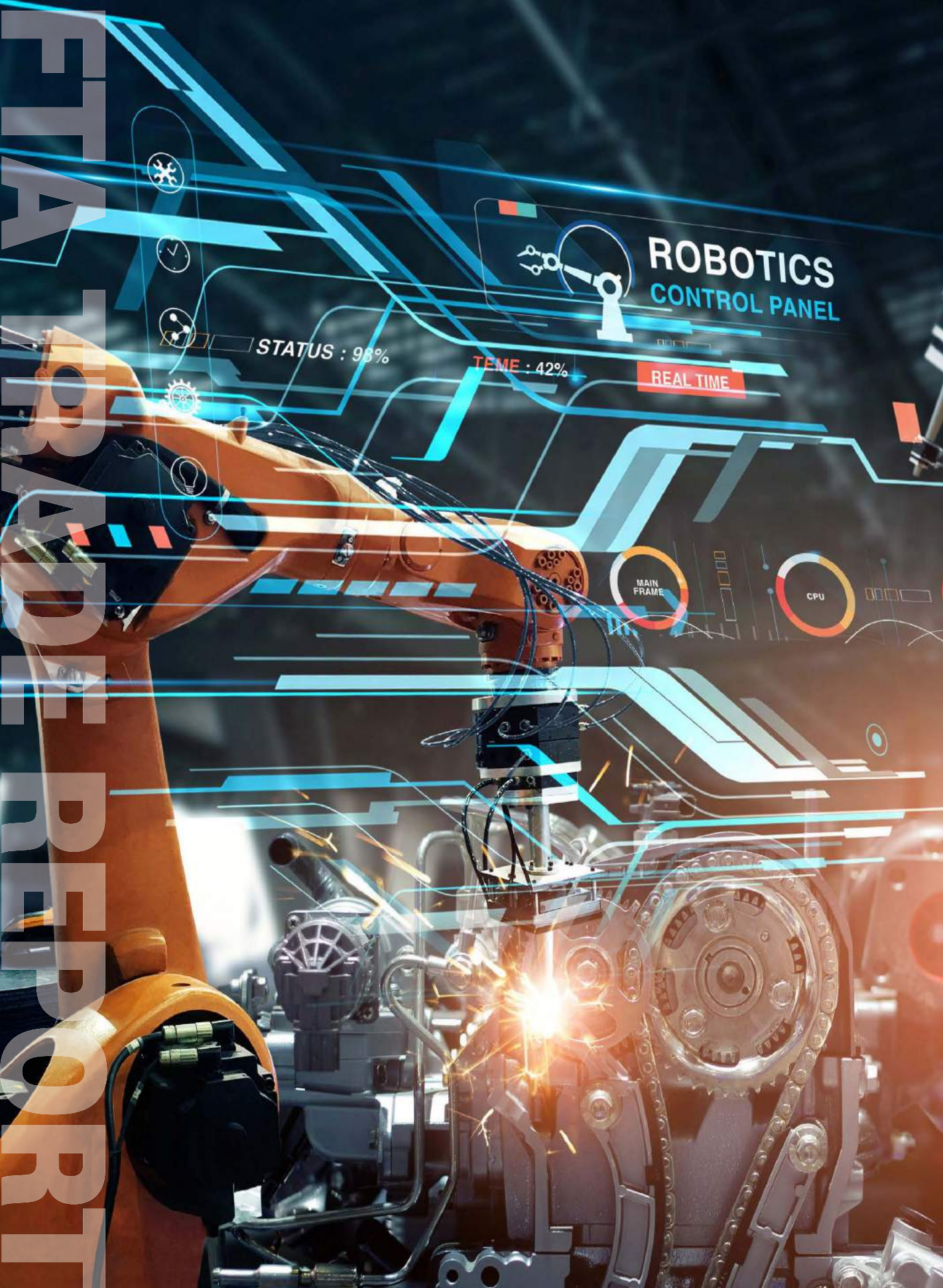
메타버스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자유무역 협정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상세계 안에서 디지털 경제가 성장·발전하고, 메타버스와 메타버스간 디지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라는 경제 활동을 매개로 디지털 거래를 위한 규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꼭 자유무역협정(FTA)라는 용어는 아닐지라도 메타버스와 메타버스의 사이에서 상호 또는 다자간의 특화된 거래를 위한 협력이 확대된다면, 디지털 무역 규범은 가상세계의 소비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2022년도 FTA 지원사업 소개





ETA  
RADI  
REPORT

# ROBOTICS CONTROL PANEL

- 
- 
- 
- 

STATUS : 98%

TEME : 42%

REAL TIME



# 품목별 원산지기준 활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HS 2022 개정사항 반영)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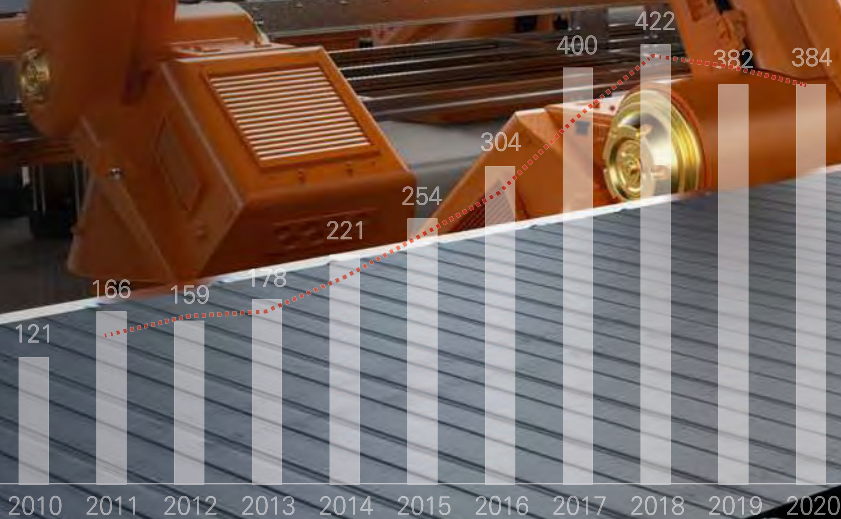
허성빈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HS 2022 개정사항 반영)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허성빈  
관세법인 보강 관세사





HS코드 개정은 FTA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에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유효한 HS코드(HS 2022)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연도 및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발효된 개별 FTA협정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수 국가와 모두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MEGA FTA인 RCEP의 경우 원래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를 HS 2022 기준으로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HS 코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FTA를 활용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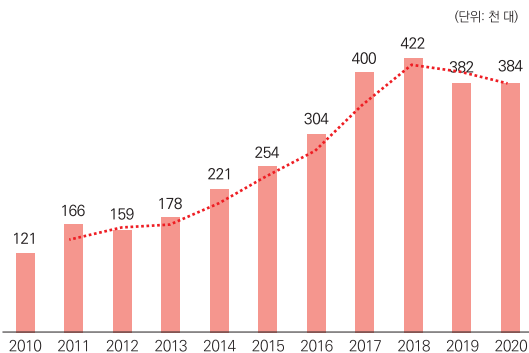
“로봇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과학적, 철학적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미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라고 불리는 로봇청소기, 최근 CES 2022 행사에서 국내 대기업이 선보인 지능형 로봇개까지 이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로봇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특개 호: HS코드 품목분류상 4단위 기준으로 품명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예: 3D 프린터는 HS 제8485호 적층제조기계)

본 고에서는 로봇 중에서도 최근 개정된 HS 2022에도 반영이 된 “산업용 로봇”의 분류와 이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산업용 로봇 연간 신규 설치대수]



\* 자료 : IFR(2021)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같은 변화는 빠르면, 다음 HS코드 개정 시에는 “로봇”의 4단위 특개 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





## 1. HS 2022 (7차 개정)

HS 협약은 세계관세기구(WCO) 주관 하에 제·개정되어 왔다. 별도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금년(2022) 1.1.부터 HS 2022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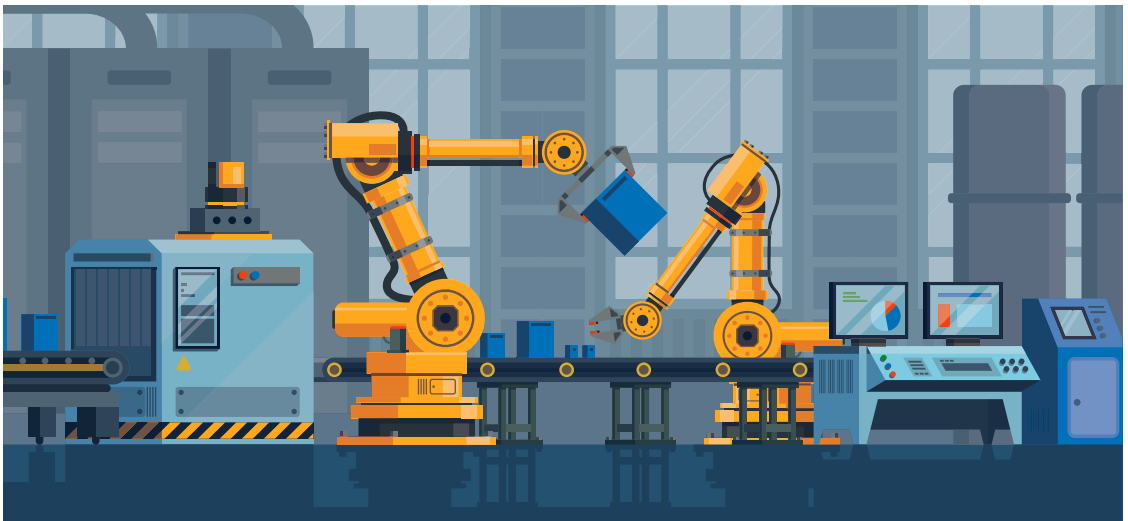
금번(7차) 개정의 주요 배경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중 민간 산업분야와 군사적 목적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군민양용; dual use)한 전략 물자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 무기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물품을 HS 품목분류표에 폭넓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산업용 로봇의 HS 코드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 [HS 주요 개정 배경 및 내용]

구분	주요 개정개요	주요품목 (신설)
7차 개정	IT 첨단기술 제품 신설 및 식량자원 확보, 환경보호, 불법 무기 등의 국제모니터링을 위한 주요품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드론, 3D 프린터</li> <li>- 전자담배, 반도체 트랜스듀서</li> <li>- 식용곤충, 탄소섬유, 산업폐기물</li> <li>- 군민양용 물품 (야간 감시카메라 등)</li> </ul>

\* 출처: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 기획재정부



## 2.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및 사례

HS 코드에서는 (제8479호 해설 참조) 산업용 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용 로봇 전부가 새롭게 분류되는 4단위 HS 코드가 신설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산업용 로봇은 제8479.50호에 분류되어 왔으며 기타의 산업용 로봇은 주요 기능, 범용성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만, 개정된 HS 2022에서는 분류기준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예시: 주요 산업용 로봇의 분류]

HS코드 (4단위)	품명	설명(호의 해설 발취)
제8427호	포크리프트 트럭, 그밖의 작업트럭	권양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 * 제8427.10-3000호 : 무인운반로봇(A.G.V)
제8428호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 * 제8428.70호: 산업용 로봇(적재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기타) - 제8479.50호와 제8427호의 것을 제외
제8479호	기타 기계류	이 호(제8479.50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한다.



### 3. 산업용 로봇의 원산지 결정기준

본 고에서는 신설된 제8428.70호\*의 기타 무인운반로봇(예시)을 기준으로 원산지결정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8428.70 : 무인운반로봇 automatic guided vehicle(8427에 분류되는 AGV 제외)

가장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상이하며 아래와 같다.

아래 표를 바탕으로 무인운반로봇의 FTA 협정은 아세안, EU로 가정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살펴보자.

제8428.70호은 신설된 호로서 위에서 살펴본 모든 협정기준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HS 2022 기준으로 발효된 협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HS코드 개정 차수 간을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 즉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계표는 ① HS 2017 → 2007, ② HS 2017 → 2012, ③ HS 2022 → HS2 017 총 3가지이다.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	협정
HS 2007	EU, 터키, 뉴질랜드, 인도, 페루, 영국
HS 2012	EFTA, 미국, 베트남,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RCEP
HS 2017	아세안, ATPA

\* 출처: 관세청

[HS 2022 → HS 2017 연계표 8428.70]

2022 Version	2017 Version	remark
8428.70 8428.90	ex8428.90 ex8428.90	New subheading 8428.70 has been created to facilitate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dual use items (industrial robots).

\* HS 2017 HS 2022 WCO 연계표 발체 (한글버전은 추후 공지 예정)

### 가) 한-아세안 FTA 가정

HS코드 기준연도는 2017버전이다. 따라서 HS 2022 → 2017 연계표를 확인하면 HS 8428.90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or RVC40 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나) 한-EU FTA 가정

HS코드 기준연도는 2007버전이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두 번의 단계를 거쳐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되며(Step1: 2022 → 2017, Step2: 2017 → 2007) 제8428호는 Step2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가)에서와 같이 HS코드 제8428.90호로 CTH or MC 45로 확인된다.

\* HS 2017 → 2007 연계표 기준 HS 제8428호는 변경사항이 없음

### [무인운반 로봇(연계표 기준 제842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RCE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것	CTH or BU 40 or BD 40
중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BU 30 or BD 40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 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 40
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 퍼센트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 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BD 45 or CTH + BU 30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E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3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CTH or MC 50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호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40
캐나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중국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BD40
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페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TSH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BD 35
뉴질랜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30 or BD 40
베트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40 or BD 40
콜롬비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으로 30%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BU 30 or BD 40
영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CTH or MC 45

\* 출처: FTA 협정문 기초로 작성

####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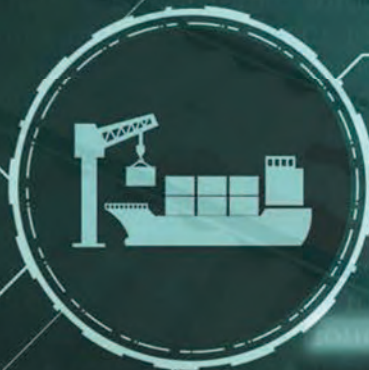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코드 개정(신설, 변경, 삭제 포함)은 FTA 활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에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입통관 시 유효한 HS코드(HS 2022)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 기준연도 및 HS코드 연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발효된 개별 FTA협정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수 국가와의 협정/협상, 발효

시점의 차이 등에 따라 기준연도를 모두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MEGA FTA인 RCEP의 경우 원래 취지에 맞게(예: RCEP 협정에서는 모든 참가국이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빠른 시일 내에 원산지결정기준 기준연도를 HS 2022 기준으로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HS 코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ETA RADAR REPORT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 원산지(포괄)확인서 활용 방법 -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FTA-PASS 400% 활용하기

### - 원산지(포괄)확인서 활용 방법 -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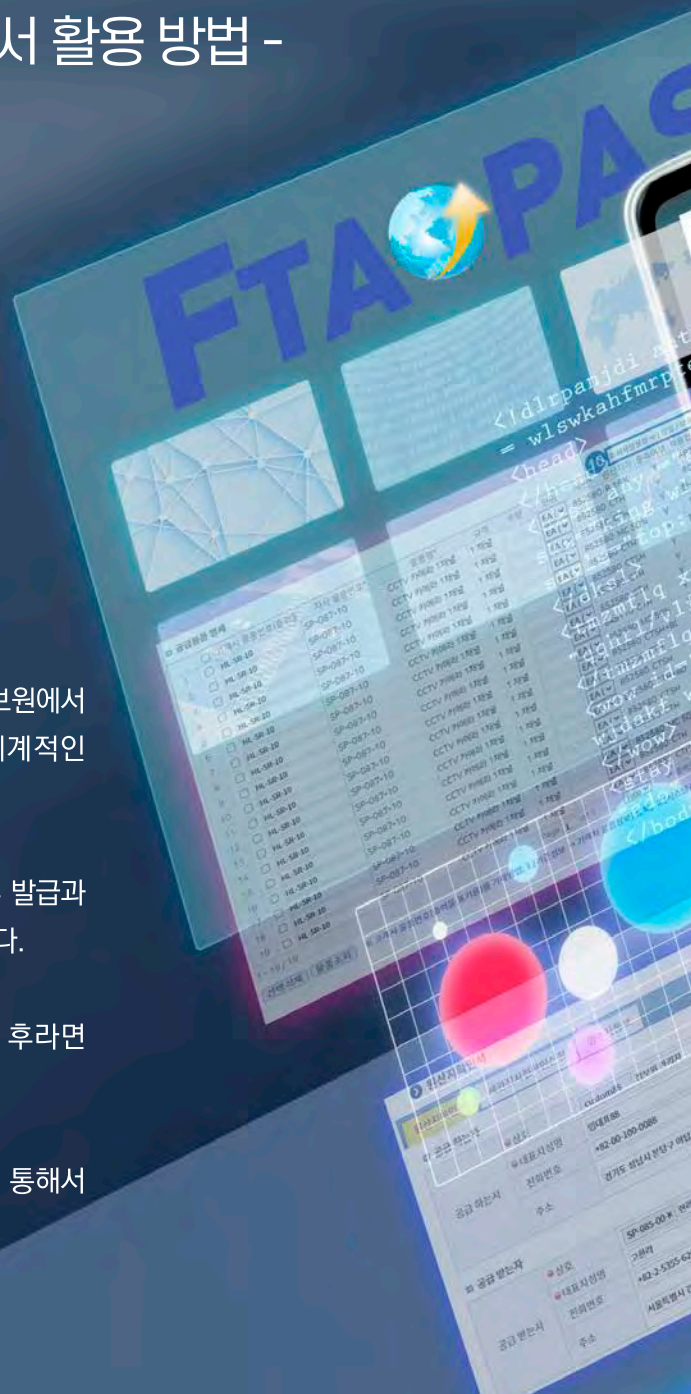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의 핵심인 원산지판정 기능을 활용하신 후라면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관리 담당자들이 FTA-PASS를 통해서 원산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 1.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원산지(포괄)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공급 되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매 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또는 최종 물품)를 동일한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물품 공급

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1.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

FTA-PASS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정보등록(기준정보, 거래정보) 후 원산지판정을 선행해야 한다.

원산지판정 과정을 수행하였다면 [서류관리 > 원산지 확인서] 메뉴에서 ❶[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메뉴 화면〉



원산지확인서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 하는자와 공급 받는자 항목을 채워 넣을 수 있다.

확인서를 요청한 고객사 정보를 불러오면 된다.

공급 하는자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자사 정보를 불러오면 되고, 공급 받는자는 원산지

정보는 ②[검색] 버튼을 사용하여 정보\*를 불러온다.

\* 정보 : FTA-PASS 메뉴 [기준정보 > 거래처]에 등록된 정보

〈공급 하는자, 공급 받는자 화면〉

그 후 공급물품 명세 항목을 채워 넣어야 한다.

해당 항목은 ③[물품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판정 정보를 불러온다.

〈공급물품 명세 화면〉

[물품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판정 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⑦ 물품번호를 지정해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 경우 물품번호도 입력한다.

④ 적용할 협정을 선택하고 ⑤ 판정기간을 지정해 ⑥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공급물품의 검색조건 설정 화면〉

⑥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판정 정보가 나타나며, ⑧ 서류발급 대상 항목을

선택해 ⑨ [적용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한다.

〈검색 시 호출되는 원산지 판정정보 화면〉

※ 조회조건을 설정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협정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기준년도	세번	생산일자	매출처	매출일	판정일시	원산지
<input type="checkbox"/> APTA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7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B II
<input type="checkbox"/> RCEP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input type="checkbox"/> 한-EFTA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input type="checkbox"/> 한-EU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07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MC!
<input type="checkbox"/> 한-뉴질랜드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07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
<input type="checkbox"/> 한-베트남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7	84811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input type="checkbox"/> 한-영국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07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MC!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07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SI
<input type="checkbox"/> 한-중국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HS2012	852580	2021-...	한라전자(H 2021-12-		2022-02-17 16:09:34	CTH

1 - 19 / 19 Page 1 of 1 1000 줄바꿈설정

적용 적용후 닫기 닫기

공급물품 명세 항목에 정보가 채워지면 포괄  
확인기간을 입력한다.

10 시작일 설정에서 [올해] 또는 [내년]을  
클릭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원산지정보를 11 저장한 후 서명권자 정보를  
확인한다.

〈포괄확인기간 지정 화면〉

공급물품 명세													
<input type="checkbox"/>	고객사 물품번호(클릭됨)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	중복여부	적용협정	원산	포괄기간시작	포괄기간종료
1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B 16%	Y	APTA	KR	2022-01-01	2022-12-31	
2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RCEP	KR	2022-01-01	2022-12-31	
3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EFTA	KR	2022-01-01	2022-12-31	
4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MC 50%	Y	한-EU	KR	2022-01-01	2022-12-31	
5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뉴질랜드	KR	2022-01-01	2022-12-31	
6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SH	Y	한-미국	KR	2022-01-01	2022-12-31	
7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베트남	KR	2022-01-01	2022-12-31	
8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싱가포르	KR	2022-01-01	2022-12-31	
9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48110 CTH	Y	한-아세안	KR	2022-01-01	2022-12-31	
10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MC 50%	Y	한-영국	KR	2022-01-01	2022-12-31	
11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SH+B	Y	한-인도	KR	2022-01-01	2022-12-31	
12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중국	KR	2022-01-01	2022-12-31	
13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SH	Y	한-중미	KR	2022-01-01	2022-12-31	
14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BD	Y	한-칠레	KR	2022-01-01	2022-12-31	
15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SH	Y	한-캐나다	KR	2022-01-01	2022-12-31	
16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콜롬비아	KR	2022-01-01	2022-12-31	
17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MC 50%	Y	한-터키	KR	2022-01-01	2022-12-31	
18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페루	KR	2022-01-01	2022-12-31	
19	<input type="checkbox"/>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채널		EA (v)	852580 CTH	Y	한-호주	KR	2022-01-01	2022-12-31	

1 - 19 / 19 Page 1 of 1 1000 준비공설정

선택삭제 물품조회 ※ 고객사 물품번호(술력물 표기용)를 기재방법: 1.[기준정보]→[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2.[시스템관리]→[환경설정]→[서류업]에서 원산지확인서 유형(B) 설정

목록으로 새 원산지확인서 11 저장

서명권자 정보는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발급/작성일자를  
발급한 당일 또는 포괄기간 시작일로 맞추면  
된다.

포괄기간 시작일로 맞출 경우 12[포괄기간  
시작일로 맞추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설정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13[발급]  
버튼을 클릭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다.

〈서명권자 정보 확인 화면〉

※ 참고사항  
 1. 수량 및 단위는 포괄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단수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만 입력합니다.  
 2. 원산지포괄기간이 입력된 공급물품은 수량 및 단위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 서명권자

· 발급번호	KIOI-39 ※ 우리회사의 관리번호 기재(자동생성) (발급번호 체계 설정방법,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 탭)	· 발급/작성일자	2021.12.12 [포괄기간 시작일로 맞추기]
· 고객사 발급번호(선택사항)	※ 현대차 FTAHUB, 삼성전자 G-SRM 등 고객사 원산지관리시스템 관리번호 기재 (예.20170700COMPANY000001)	· 서명사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작성자 / 직위	김소연 연구원	· 서명	Soyeon Kim
· 상호	정보원 관리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번길 8, 성남세관 (아람동)		

목록으로    미리보기    13    발급





### 1.2. 원산지(포괄)확인서 출력 방법

원산지확인서를 최종저장 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❶[원산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발급된 원산지확인서는 ❷[한글, PDF, EXCEL, WORD]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1. 발급번호(Reference No.): KD H99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정보원 관리자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임대표88  
 주소(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로205번길 8, 성남세관 (아담동)  
 전자우편주소(E-mail): user88@test.go.k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211-62-16919  
 전화번호(Tel): +82-00-100-0088  
 팩스번호(Fax): +82-00-100-0088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한라전자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고한라  
 주소(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전자우편주소(E-mail): hanra@halla.com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019-00-00000  
 전화번호(Tel): +82-2-5355-6264  
 팩스번호(Fax): +82-2-6264-5355

공급품명 명세서(Good Statements)

4. 연번	5. 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여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 (Origin)	12. 원산지표기기간 (년월일 - 년월일) (YYYYMMDD - YYYYMMDD)
1	한-EFTA	8525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 1채널	B 16X	[√] [ ]	KR	2022.01.01 - 2022.12.31	
	한-EU	8525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 1채널	CTH	[√] [ ]	KR	2022.01.01 - 2022.12.31	
	한-EFTA	8525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 1채널	CTH	[√] [ ]	KR	2022.01.01 - 2022.12.31	
	한-EU	8525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 1채널	M C 50X	[√] [ ]	KR	2022.01.01 - 2022.12.31	
	한-EFTA	852580	HL-SR-10 CCTV 카메라 1채널 / 1채널	CTH	[√] [ ]	KR	2022.01.01 - 2022.12.31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성 자(Declarer): 김소연 (Kim Soyeon)  
 직 위(TITLE): 정보원 관리자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 & 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로205번길 8, 성남세관 (아담동)  
 작성 일(Date): 2022년 01월 01일 (2022.01.01)

1. 원산지 확인서 출력

## 1.3.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 출력 방법

원산지소명서와 자재명세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서이다.

협정별로 개별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① 단건으로 출력하면 되고,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② 일괄출력하면 된다.

원산지확인서
홈 · 서류관리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사전확인신청
영수자정보

**공급 하는자**

· 상호	정보원 관리자	· 사업자번호	211-82-16919
· 대표자성명	임대표88	· E-mail	user88@test.go.kr
· 전화번호	+82-00-100-0088	· 팩스번호	+82-00-100-0088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로205번길 8, 성남세관 (아담동)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공급 받는자**

· 상호	한라전자	· 사업자번호	019-00-00000
· 대표자성명	고한라	· E-mail	hanrago@halla.com
· 전화번호	+82-2-5355-6264	· 팩스번호	+82-2-6264-535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 원산지요청서번호

고려사 물품번호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	종목여부	적용협정*	원산지*	포괄기간	포괄기간	모니터	소명서	자재명세서
1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B 16%	Y	APTA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2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SH	Y	한-중미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3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SH	Y	한-캐나다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4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EFTA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5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뉴질랜드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6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페루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7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MC 50%	Y	한-영국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8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베트남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9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MC 50%	Y	한-터키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0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호주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1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콜롬비아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2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MC 50%	Y	한-EU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3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48110 CTH	Y	한-아세안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4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BD	Y	한-칠레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5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SH	Y	한-미국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6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중국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7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RCEP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8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SH+BE	Y	한-인도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9	HL-SR-10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1	채널	EA 852580 CTH	Y	한-싱가포르	KR	2022-01	2022-12		출력	출력	

1 - 19 / 19      Page 1 of 1      1000      [줄바꿈설정](#)

**서명권자**

· 발급번호	KIOI-39	· 발급/작성일자	2022-01-01
· 고객사 발급번호		· 서명사용여부	예
· 작성자 / 직위	김소연 / 연구원	· 서명	<i>Soyeon Kim</i>
· 상호	정보원 관리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로205번길 8, 성남세관 (아담동)		

소명서 일괄출력
자재명세서 일괄출력
원산지 확인서 출력(공급물품입력순)
목록으로
새 원산지확인서 작성
문서발신
세관장사전확인신청
원산지 확인서 출력

〈원산지소명서 출력 화면〉

원산지소명서

1. 수출자  
 상호 한국전자  
 대표명 김연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Inanngohall.com)  
 2. 생산자  
 상호 영보원 전자  
 대표명 임대홍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205길 9, 영보원 (099899 영보원 AR)

물품명세  
 9 품목구분 [SP-097-10] CCTV 카메라 (해상도 4 채널 4 채널 오디오) No. 852580  
 5 품목가액  
 가격조건 공평 조건 (F O B )  
 6 원산지결정기준 6 (EX)  
 7 자유무역협정일정 APTA

15. 합계  
 원산지자료 (국산) 168  
 비원산지자료 (수입산) 134  
 합계 302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소액의 산자율 수출여부 예 [ ] 아니오 [x]  
 17. 소액의 산자율 수출여부 예 [x] 아니오 [ ]  
 18. 국가차기율 수출여부 예 [ ] 아니오 [x]  
 19. 권역기준 예 [ ] 아니오 [x]  
 20. 제조기준 예 [ ] 아니오 [x]  
 21. 권역기준 예 [ ] 아니오 [x]  
 22. 제조기준 예 [ ] 아니오 [x]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 아니오 [x]  
 24. 기타 예 [ ] 아니오 [x]  
 25. 원산지 결정 순서 (x) 불충족 [ ]

Soyeon Kim

원산지소명서 단건출력 시(국문)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 Exporter  
 Name of Company: Inanngohall  
 Representative: Kim, Yoon-hee  
 Address: 115, Inanngohall, Gangnam-gu, Seoul, Korea (Inanngohall.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YEBOWON  
 Representative: Lim, Dae-hong  
 Address: 9, Yebowon 205-gil, Bundang-gu, Gyeonggi-do, Korea (Yebowon AR)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HS No.: 852580  
 5. Value: 134  
 Price: FOB  
 6. Origin Criteria: 6 (EX)  
 7. Name of FTA: APTA

List of Materials (Parts)  
 9. HS No.: 852580, 852580, 852580, 852580  
 10. Material Name: Camera, Camera, Camera, Camera  
 11. HS No.: 852580, 852580, 852580, 852580  
 12. Origin: Korea, Korea, Korea, Korea  
 13. Value: 168, 134, 134, 134  
 14. Supplier: Inanngohall, Inanngohall, Inanngohall, Inanngohall

15. Total Cost  
 Origin Materials: 168  
 Non-Origin Materials: 134  
 Total: 302

16. Non-Added Criterion: Yes [ ] No [x]  
 17. Tariff Origin Criterion: Yes [ ] No [x]  
 18. Value-Added Criterion: Yes [ ] No [x]  
 19. Country of Origin Criterion: Yes [ ] No [x]  
 20. Production Process Criterion: Yes [ ] No [x]  
 21. Cumulative Processing: Yes [ ] No [x]  
 22. De Minimis: Yes [ ] No [x]  
 23. Accumulation: Yes [ ] No [x]  
 24. Direct Consignment: Yes [ ] No [x]  
 25. Other Requirements: Yes [ ] No [x]

Soyeon Kim

원산지소명서 일괄출력 시(영문)



〈자재명세서 출력 화면〉

SAVE PRINT HWP PDF XLS DOC 1/18 100% INFO

###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 : [SP-087-10] CCTV 카메라 1채널 (HS8525.80)  
 규격 / 품번 : 1 채널 / SP-087-10  
 적용협정명 : APTA (원산지기준: B16%)  
 원재료 사용내역

연번	품명 / 규격	세 명 품목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	매입처	입증서류	연락처
1	[SP-087-01] 카메라모듈 / 1.024	8529.90	불명	1	EA	44	44	Beijing Electron	거래명세서	+86-10-8704-9282
2	[SP-087-02] 렌즈 / 1 인치	9002.11	한국	1	EA	38	38	강릉전자	원산지명세서 출발지명세서 거래명세서	+82-89-6978-6888
3	[SP-087-03] 커패시터 / 700	8532.21	불명	1	EA	27	27	Panoh Electron	원산지명세서	+33-1-42497-8055
4	[SP-087-04] IC 메모리 / 12870(메이플)	8542.32	불명	1	EA	33	33	Tokyo Electron	원산지명세서	+81-4-4532-7819
5	[SP-087-05] 스위치	8536.50	한국	1	EA	130	130	이형전자	출발지명세서 원산지명세서 거래명세서	+82-92-2543-4071
6	[SP-087-06+] 플라스틱 케이스 U / 1 Unit	3923.29	불명	1	EA	30	30	Sainsman Electron	원산지명세서	+86-10-2485-8847
합 계							원산지재료 (역내산)	168		
							비원산지재료 (역외산)	134		
합 계							302			

작 성 자 : 김소연  
 작 위 : 연구원  
 상 호 및 주 소 : 정보원 관리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번길 8, 성남세관(아람동)  
 작 성 일 자 : 2022-01-01

*Soyeon Kim*

자재명세서 단건출력 시(국문)

SAVE PRINT HWP PDF XLS DOC 1/18 100% INFO

### Bill of Materials

Description of Goods : [SP-087-10] CCTV Camera 1 Channel (HS8525.80)  
 Model Name / Part No. : 1 Channel / SP-087-10  
 Applicable FTA : APTA (Origin Criteria: B16%)  
 List of Materials(Parts)

S/N	Material Name / Model	HS No.	Origin	Qty	Unit	Unit Price	Cost	Supplier	Document of Proof	Supplier's Tel No.
1	[SP-087-01] Camera Module / 1.024	8529.90	Unidentified	1	EA	44	44	Beijing Electron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86-10-8704-9282
2	[SP-087-02] Lens / 1 Inch	9002.11	KOREA	1	EA	38	38	Kangwon Electron	Declaration of Origin (SP-087-01),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82-89-6978-6888
3	[SP-087-03] Capacitor / 700	8532.21	Unidentified	1	EA	27	27	Panoh Electron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33-1-42497-8055
4	[SP-087-04] IC Memory / 12870Byte	8542.32	Unidentified	1	EA	33	33	Tokyo Electron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81-4-4532-7819
5	[SP-087-05] Switch	8536.50	KOREA	1	EA	130	130	Seehyoung	Declaration of Origin (SP-087-01),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82-92-2543-4071
6	[SP-087-06+] Plastic Case U / 1 Unit	3923.29	Unidentified	1	EA	30	30	Sainsman Electron	Statement of Transaction or Tax Invoice	+86-10-2485-8847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168		
							Non-Originating Materials	134		
							Total	302		

자재명세서 일괄출력 시(영문)

## 2. 마무리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덧붙여 FTA-PASS 회원사 대상으로 품목 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TA-PASS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 HS자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HS 자문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제공하고 비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HS정보조회] > HS 자문) 메뉴에서 신청
- \* 신청횟수 : 연간 5회 무료 지원

### 현장방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지원해 드리는 대면 서비스

-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기업지원] > 현장지원) 메뉴에서 신청
-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원격지원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모니터를 공유하여 지원해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우측 하단 원격지원 아이콘 클릭 및 실행
-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전화지원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유선으로 해결해 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 신청방법 : 1544-0645 전화
-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FTA-PA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배운 후 활용하는게 이상적이다.

회원가입	사전교육	정보입력	판정·서류발급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PASS 접속</li> <li>기업정보 입력</li> <li>가입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결정기준</li> <li>재료비산정방법</li> <li>원산지관리준비</li> <li>FTA-PASS 활용 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건수기등록</li> <li>- 엑셀일괄등록</li> <li>- ERP자료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약상대국 원산지판정</li> <li>원산지증명서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li> <li>- 원산지확인서</li> <li>- 국내제조확인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대1 현장지원</li> <li>협력사 교육</li> <li>문의상담</li> <li>기능개선제안</li> </ul>

##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로 원산지판정 및 서류를 발급하면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을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FTA-PASS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지금이라도 FTA-PASS를 통해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p><b>정확한 원산지판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판정</li> </ul>	 <p><b>원산지증명서류 발급부터 유통까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자율/기관)</li> <li>원산지확인서</li> <li>국내제조확인서</li> </ul>	 <p><b>원산지 입증자료는 안전하게 보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판정 및 서류발급 이력관리</li> <li>원산지인증수출자 서류 관리</li> </ul>	 <p><b>원산지 검증까지 완벽하게 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검증 표준질서서 자동 생성·출력</li> </ul>
---	---	--	--

#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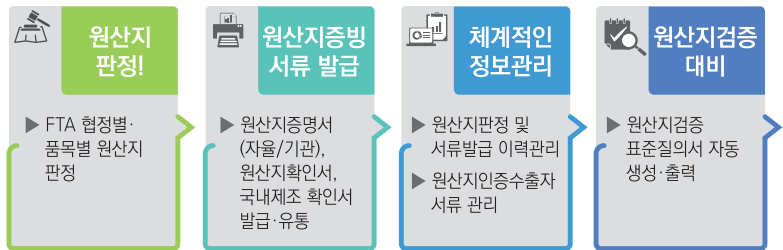
###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 2. FTA-PASS 주요기능



##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수출 (재고관리기능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산출</li> <li>-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 13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수출/국내공급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li> <li>-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간편형	국내공급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li> <li>-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li> <li>-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li> </ul>
체험형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li> <li>-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li> </ul>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mailto:fta-pass@origin.or.kr)



# ETA TRAD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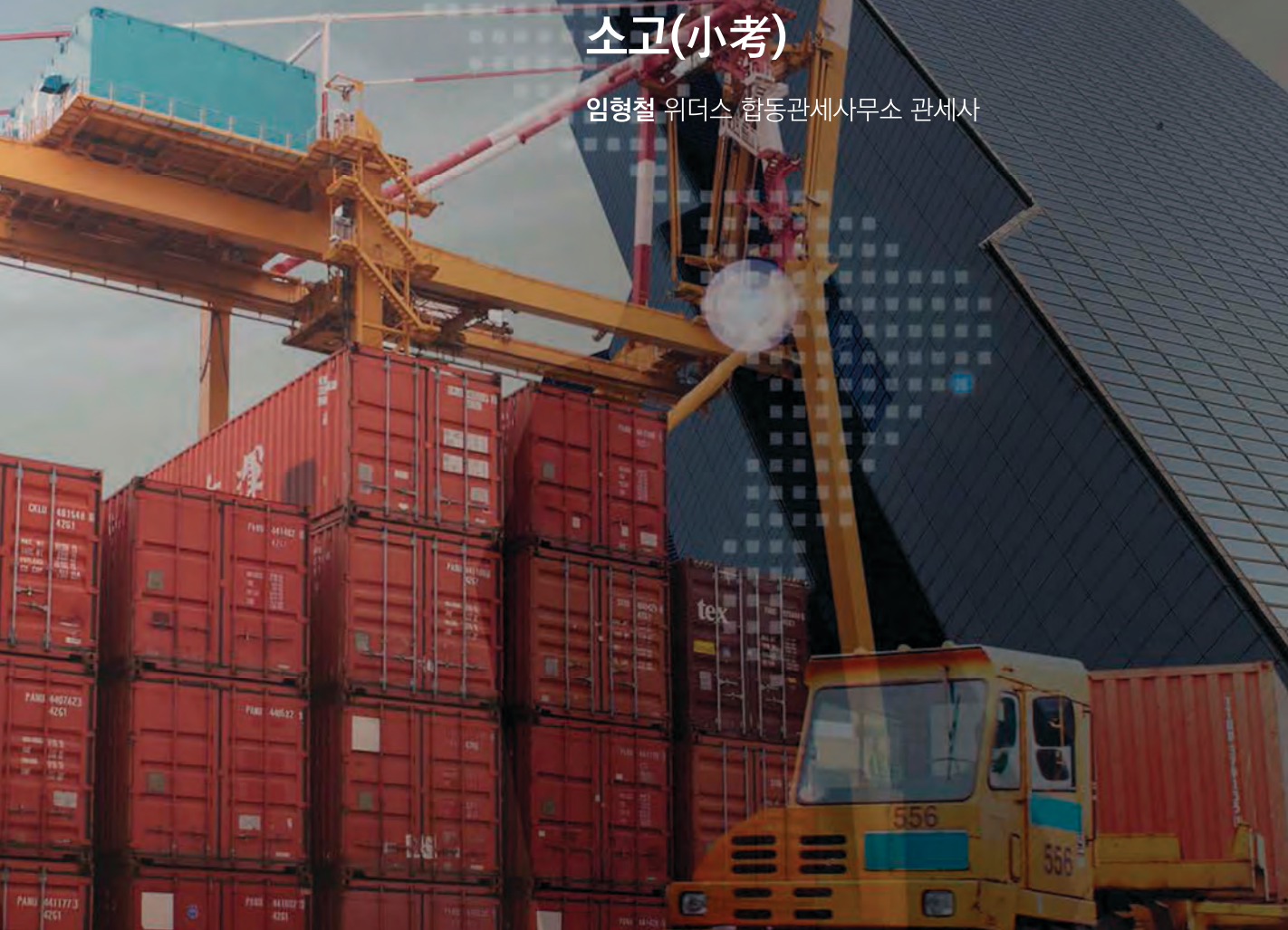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기업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고(小考)

임형철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 기업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소고(小考)



임형철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FTA의 여러 가지 혜택 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수출입 물품에 관세절감이며, 관세절감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원산지증명" 업무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국가가 여러 협정을 맺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을 요구한다면 요구를 받은 즉시 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임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며 제조관련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비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는 국내 매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제조사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1. 시작하며

2022년 2월부터 우리나라도 RCEP<sup>1)</su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8개 국가와 18개의 FTA를 체결한 명실상부한 FTA 강대국으로 한걸음 발돋움 하게 되었으며, 주요 경제권 중 그 동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일본까지 RCEP을 통해 FTA의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이제 FTA원산지 업무는 우리 기업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FTA의 여러 가지 혜택 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수출입 물품의 관세절감이며, 관세절감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원산지증명” 업무이다.

즉, 수출기업은 해외바이어의 관세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국내 내수기업도 납품하는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원산지증명” 요청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세사의 관점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가 체약국이다.

## 2. 고객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하자

원산지증명이란 우리 회사가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서류”로서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제조한 물품이면 당연히 한국산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FTA 협정문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고, 원산지 증명에 따른 결과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해야 고객사가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증명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상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실례로 고객사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일반 비특혜증명서로 오인하여 비특혜증명서를 제공하였다가 현지에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통관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또는 베트남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였는데 통관 단계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수입국의 특혜관세율이 달라지거나 역시 불필요한 물류비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sup>2)</sup>

이렇듯 원산지증명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동일국가가 여러 협정을 맺은 경우<sup>3)</sup>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산지증명을 요구한다면 요구를 받은 즉시 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2)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3) 예를 들어 중국은 APTA, 한-중 FTA, 한-RCEP 모두 해당이 된다.

### 3. 제조사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원산지증명 업무는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조·생산·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다.

즉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 1단위가 어떤 원재료로 구성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재명세서>, 제품이 어디에서 어떤 공정으로 생산되는지를 입증하는 <제조공정도>,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를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등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조사에게 구매한 물품을 그대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수출업체 또는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공급업체는 고객사의 FTA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당사의 고객사인 한 인쇄기계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 당시 태국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존에 항상 발급하던 상공회의소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처럼 간단하게 발급<sup>4)</sup>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선적에 임박하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재명세서를 비롯한 각종 원산지 입증자료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 입장에서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려워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



4)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과 무관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키리스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부랴부랴 제조사를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하고 관세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어렵게 작성하여 간신히 한국산 판정 자료를 구비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이미 선적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시간이 경과하여 현지 통관 보류에 따른 비용은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임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업무이며 제조관련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비 제조 수출기업의 경우는 국내 매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제조사와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4. 도장만 찍어 넘겨주는 서류가 절대 아니다

FTA가 넓게 확대가 됨으로써 원산지증명 업무는 비단 수출기업의 고유 업무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특히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내수기업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한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사의 요청대로 서명이나 도장만 날인하여 고객사에게 넘겨주는 것이 많은 기업의 실제 상황이다.

<원산지확인서>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5호에 근거한 서류로 “우리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산 물품”임을 스스로 판단하여 발급하는 “법적 서류”이다.

즉, 위에 언급한 <FTA 원산지증명서> 동일한 성격과 효력이 부여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단지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용도가 아닌 국내 내수거래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증명서류인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공급물품이 FTA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이고, 이를 받은 수출자나 고객사는 우리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상 내용을 신뢰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다시 다음 업체에게 2차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즉, <원산지확인서>는 위에 설명한 “제조·생산·구매” 관련 자료를 근거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모든 근거자료는 자체적으로 보관<sup>5)</sup>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수입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요청에 대응하게 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대로 발급되지 않은 <원산지확인서>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sup>6)</sup>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FTA 원산지증명 업무는 그 특성상 해외 바이어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가 적법하게 발급하지 못한 <원산지확인서>로 인하여 고객사(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까지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 바이어가 면제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5) FTA관세특례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에 따라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동 법 44조(벌칙) 2항 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FTA관세특례법 제44조(벌칙) 2항 1호에 따라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마치며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FTA 원산지업무 당사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 발효시기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FTA 업무를 체감하게 된 것은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일 것이다.<sup>7)</sup>

EU를 기준으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FTA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현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노력 대비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업무<sup>8)</sup>”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이다.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정에 맞게 리스크를 안내하면서 업무를 조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담당자(대기업도 큰 차이는 없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출입 업무 외에 결코



간단하지 않는 업무가 추가되어 매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조사 등의 사후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흔쾌히 담당하고 싶은 업무는 결코 아닐 것이다.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FTA, 즉 자유무역의 확대는 당연한 흐름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다만, 확대되는 FTA만큼 이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쉽지 않은 FTA 원산지관리 업무와 씨름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가 제공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7) 2011년 EU가 발효되고 이듬해 미국이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등의 FTA 관련 관세행정 업무가 폭증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였다.

8) FTA의 효과로 수입자의 관세절감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당 관세절감분을 수출자가 체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Sale	Buy
Gold		
Platinum	\$647.00	
Silver	\$381.00	\$904.51
Copper	\$774.00	\$509.78
Steel	\$616.00	\$1,061.93
Beryllium	\$449.00	\$837.76
Manganese	\$743.00	\$537.90
Aluminum	\$598.00	\$754.69
Chrome	\$299.00	\$795.34
Nickel	\$666.00	\$350.00
Bauxite	\$421.00	\$350.00
	\$730.00	
Cotton		
Flax	\$162.00	
Feeding	\$176.00	
Wool	\$243.00	
Fur	\$261.00	
Sateen	\$116.00	
Silk	\$201.00	
	\$177.00	
Oil		
Gas	\$609.00	
Electricity	\$516.00	
Black	\$478.00	

	Sale	Buy	Grow
Gold	\$285.00	\$314.07	10
Platinum	\$375.00	\$480.75	28
Silver	\$625.00	\$663.75	3
Copper	\$769.00	\$828.88	39
Steel	\$424.00	\$552.90	30
Beryllium	\$326.00	\$419.89	21
Manganese	\$400.00	\$448.80	11
Aluminum	\$588.00	\$726.77	12
Chrome	\$351.00	\$444.25	23
Nickel	\$517.00	\$578.00	11
Bauxite	\$583.00	\$753.74	1
		\$597.90	21
Cotton	\$118.00	\$162.60	59
Flax	\$191.00	\$191.30	3
Textiles	\$208.00	\$260.30	3
Wool	\$217.00	\$244.34	1
Fur	\$199.00	\$246.40	16
Sateen	\$172.00	\$210.40	5
Silk	\$198.00	\$210.40	5
Oil	\$789.00	\$199.5575	4
Gas	\$722.00	\$687.50	2
Electricity	\$602.00	\$687.5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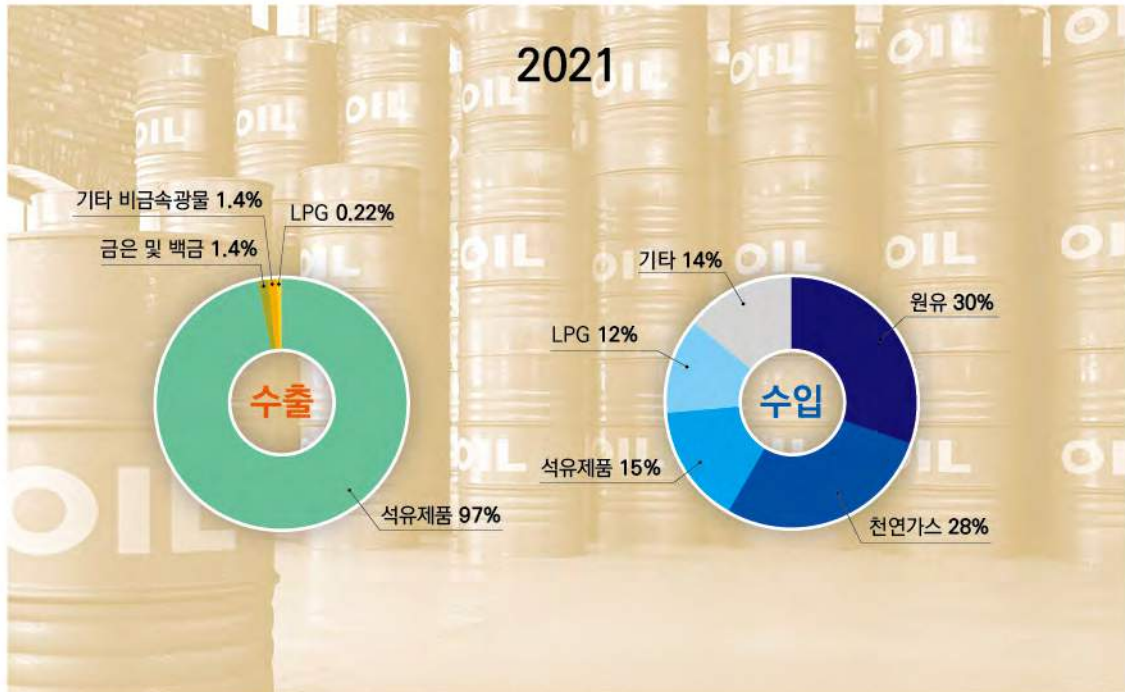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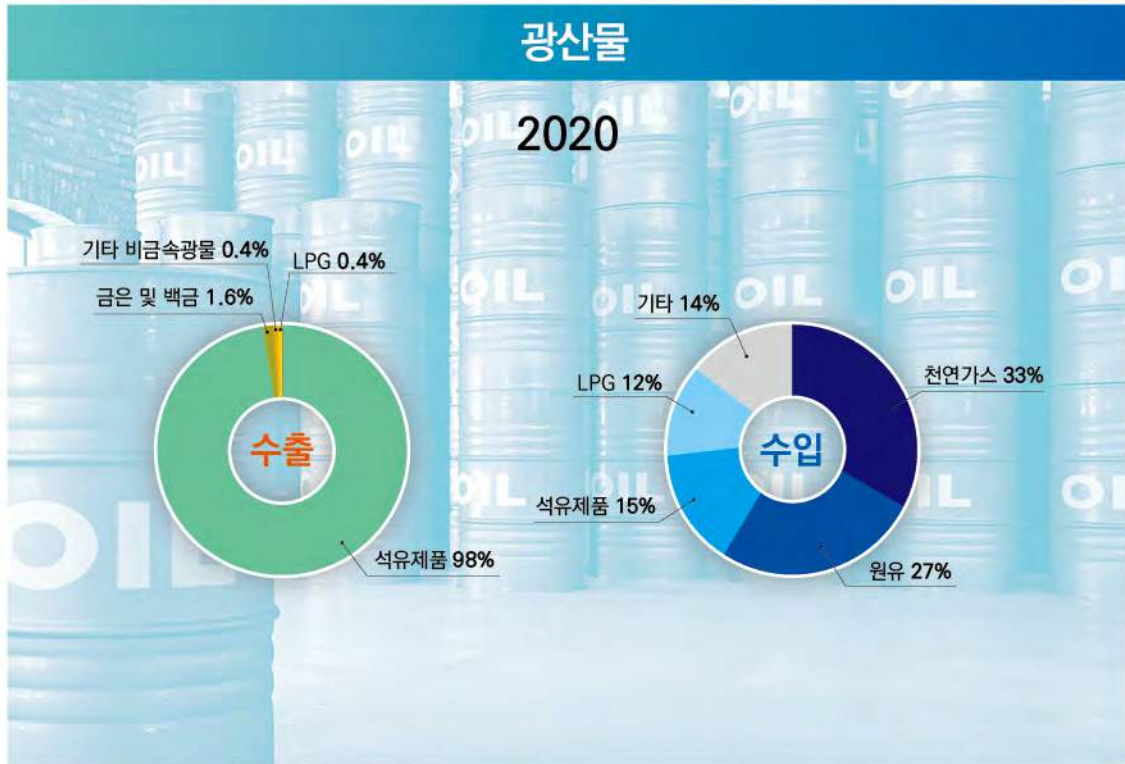
#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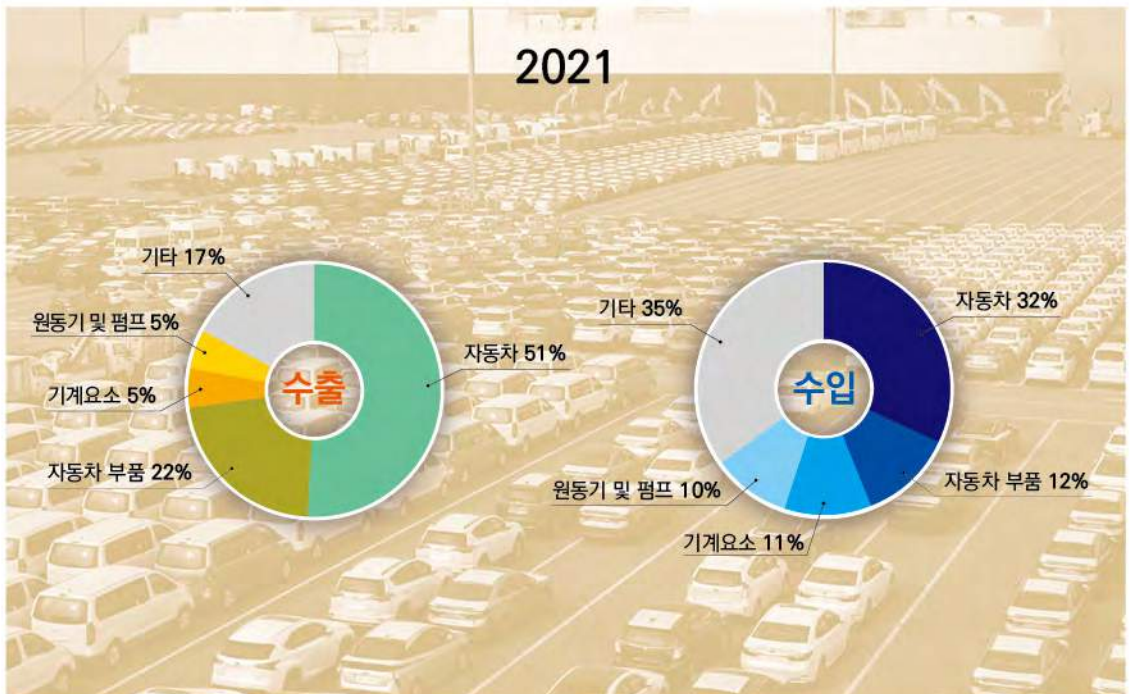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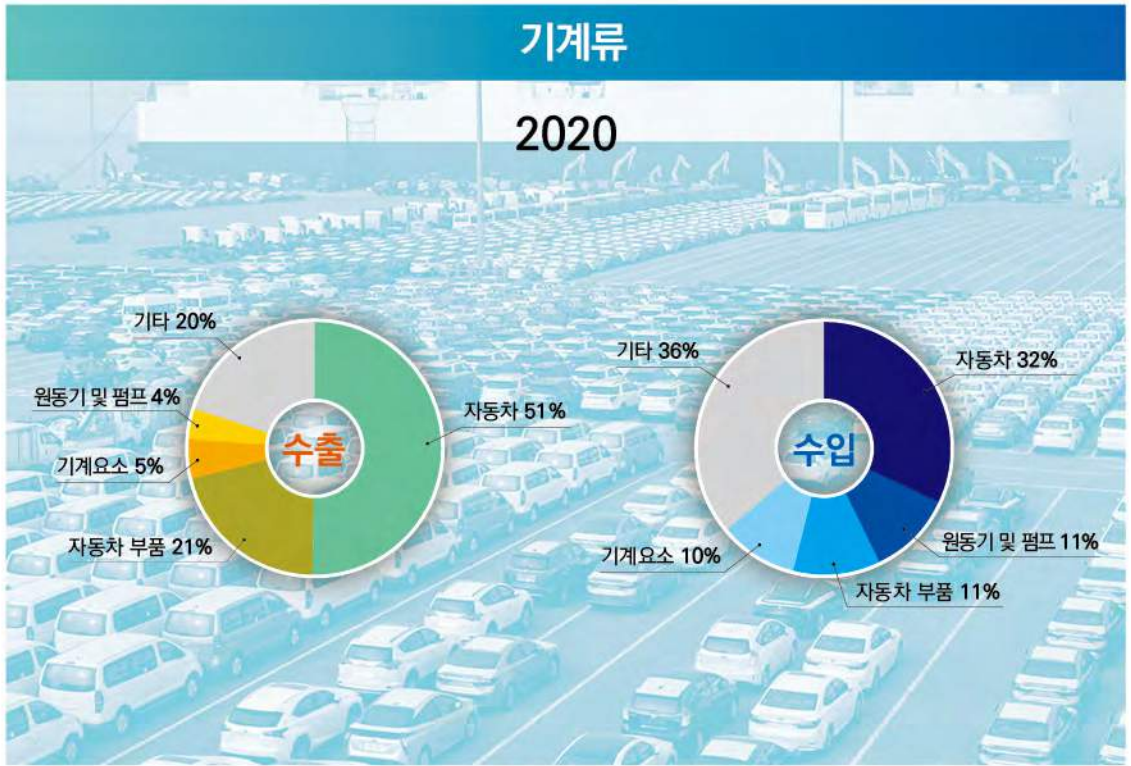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2020년-2021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0년과 2021년의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수출·수입)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0년 vs. 2021년 비교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TA 대상 수출입 (MTI 1단위, MTI 3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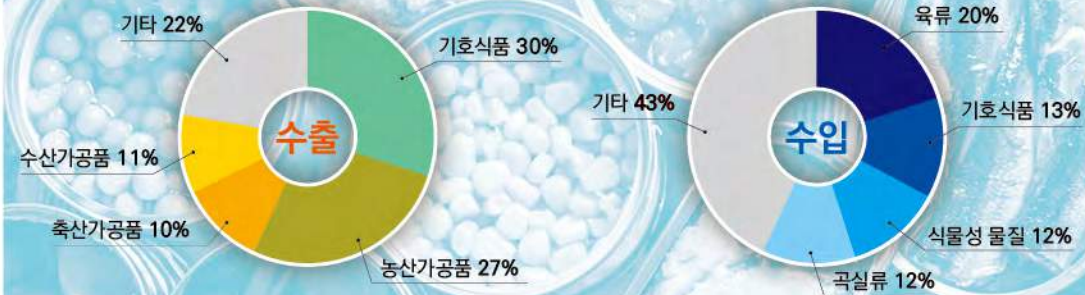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20년-2021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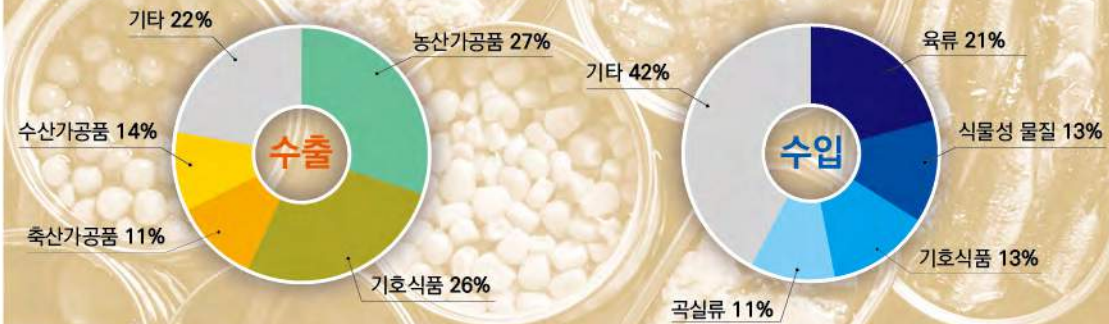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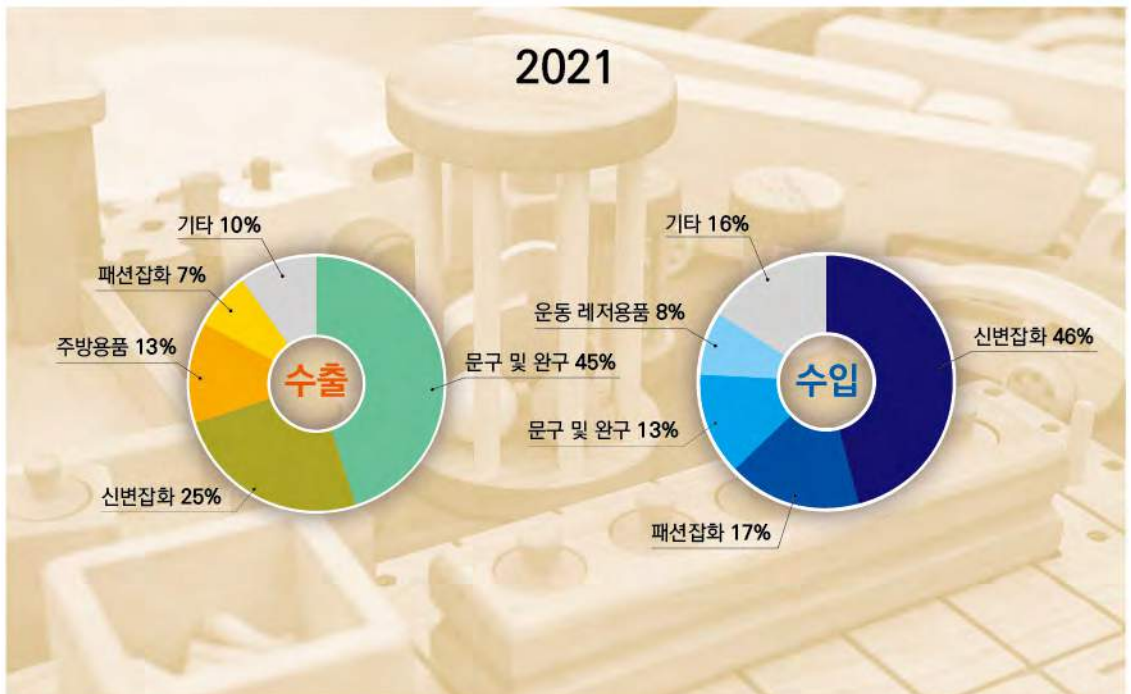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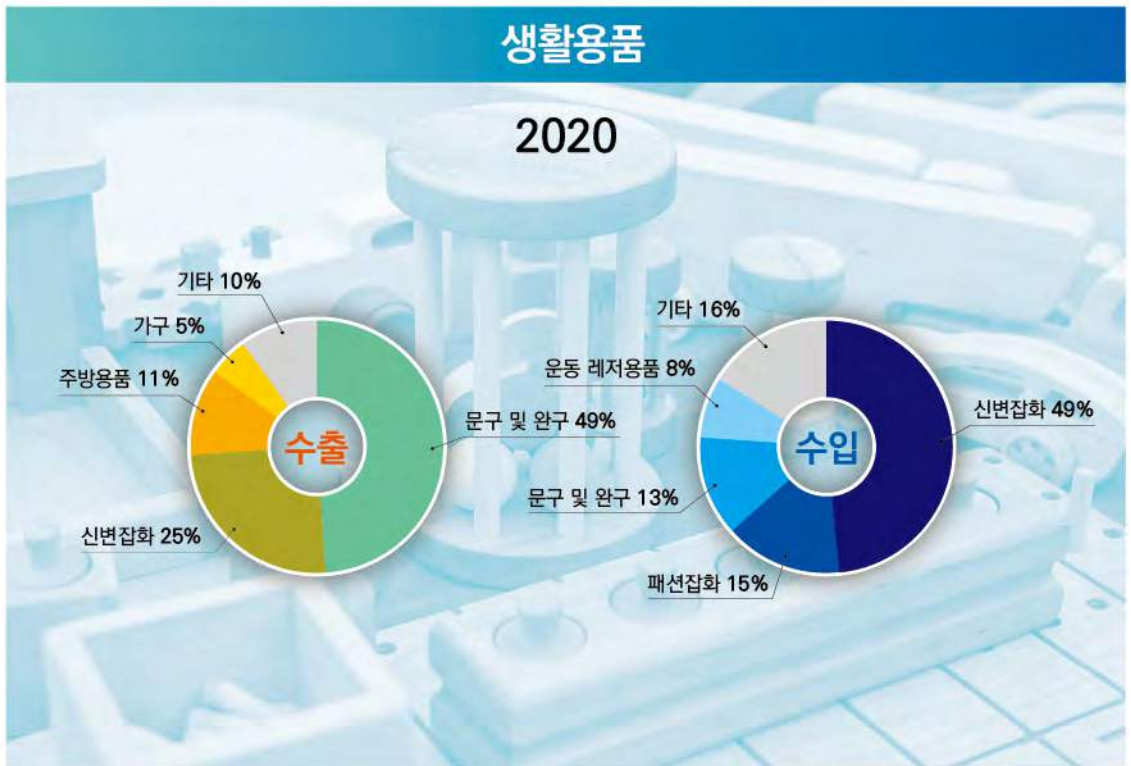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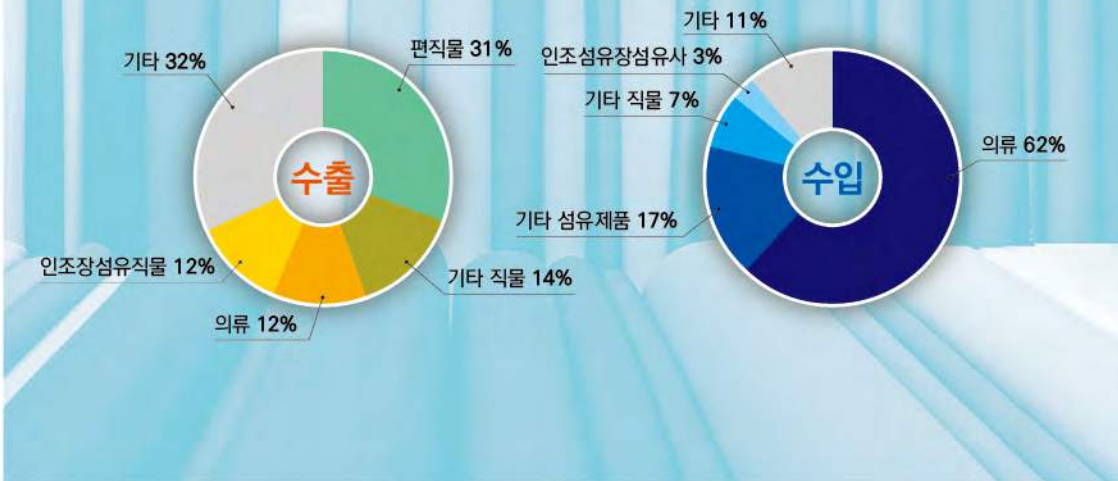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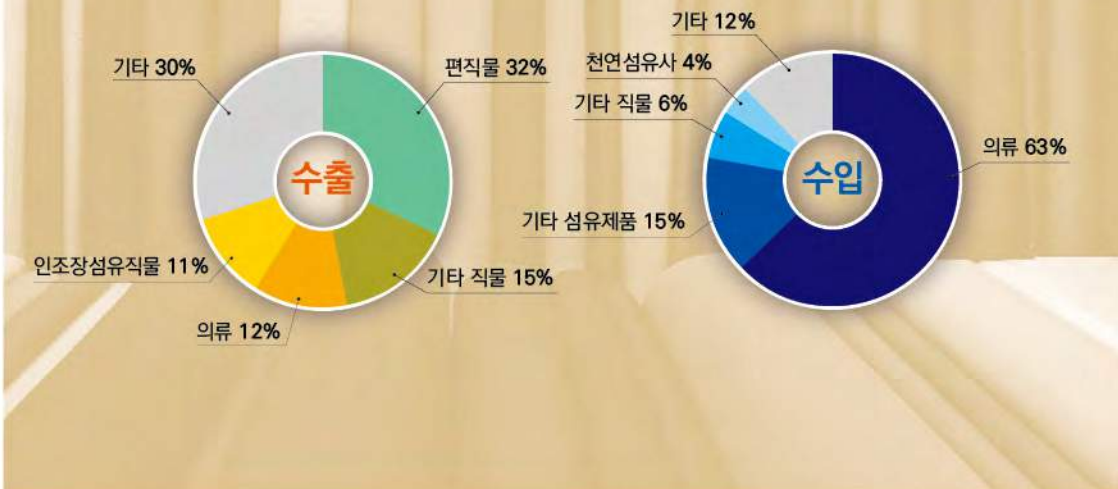


##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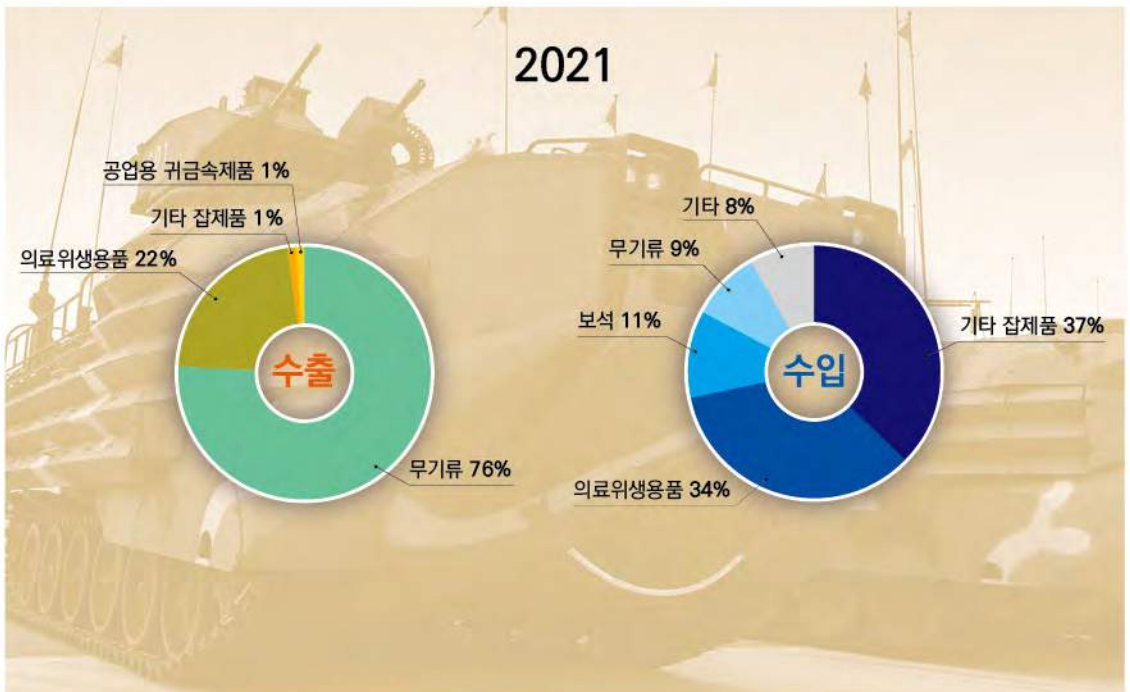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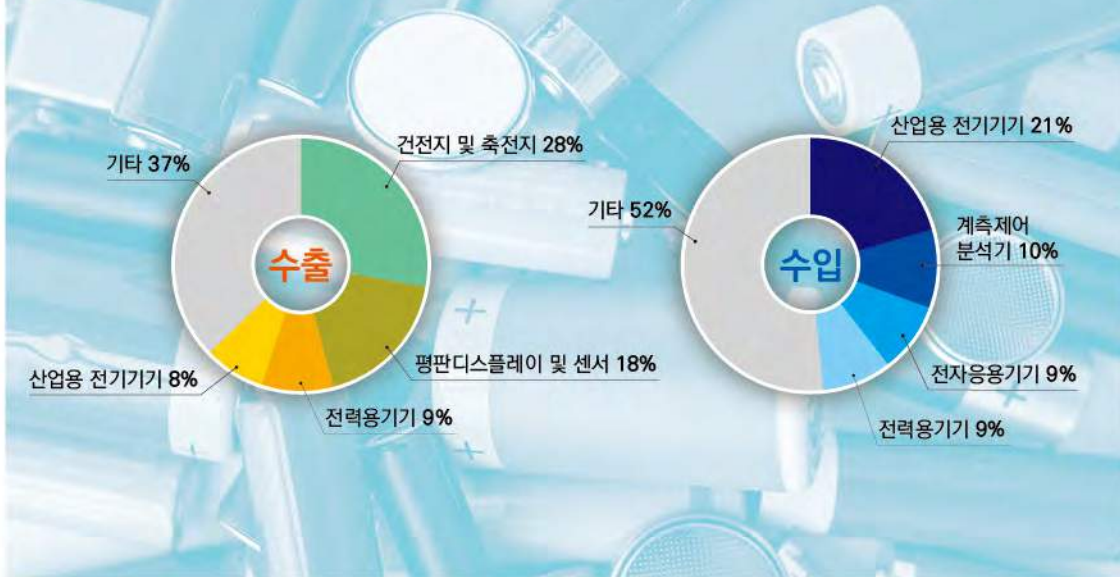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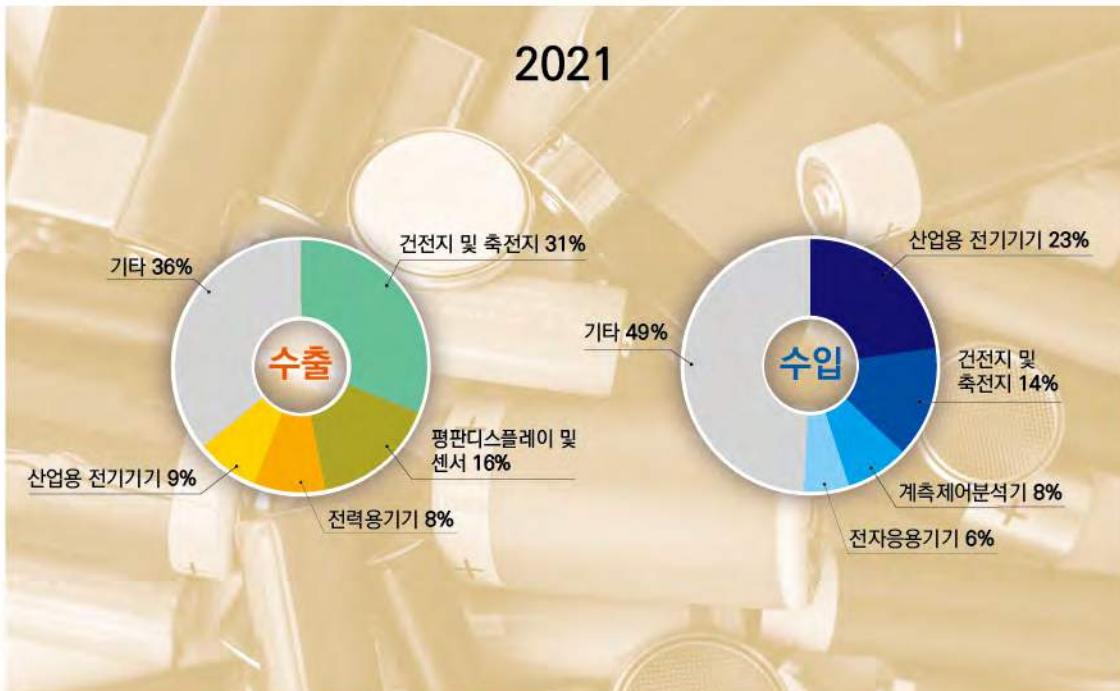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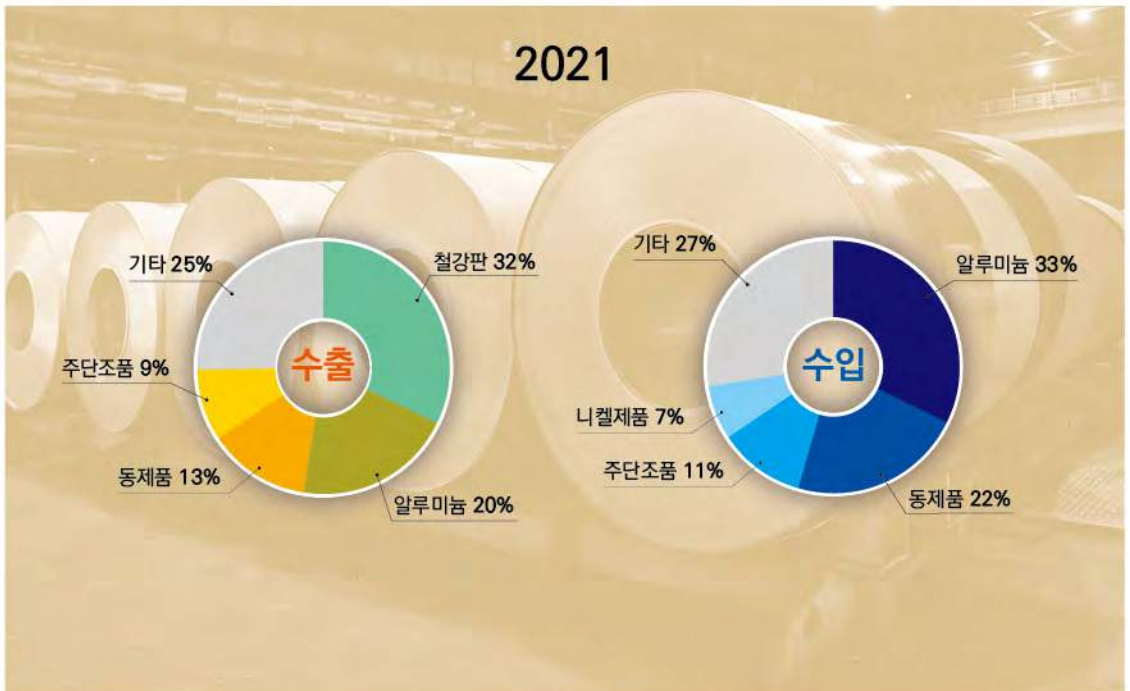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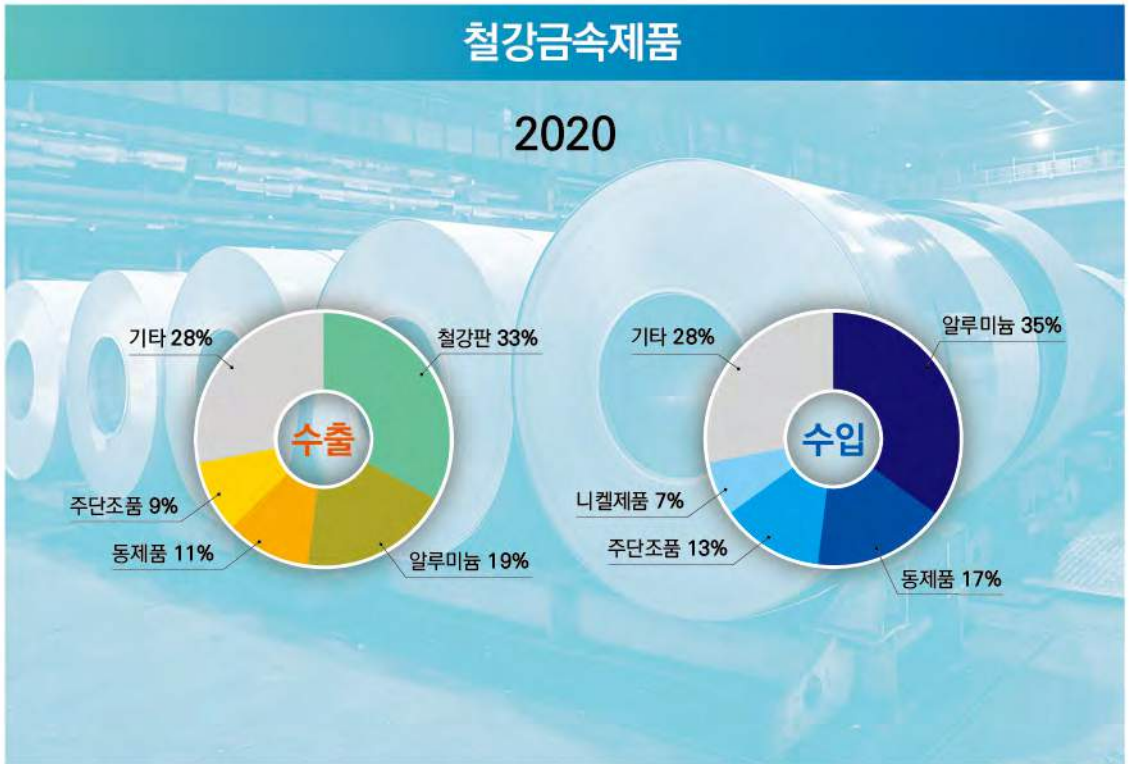
## 전자전기제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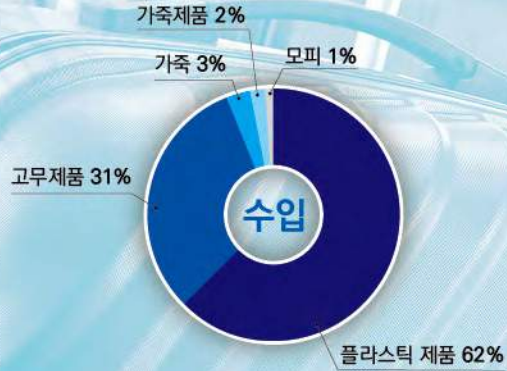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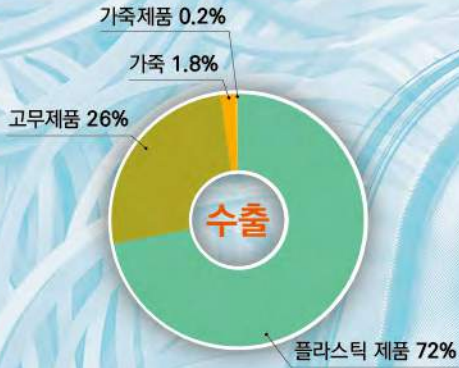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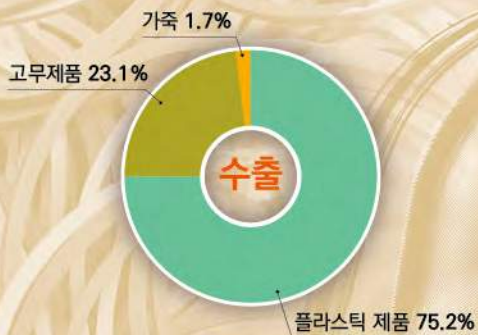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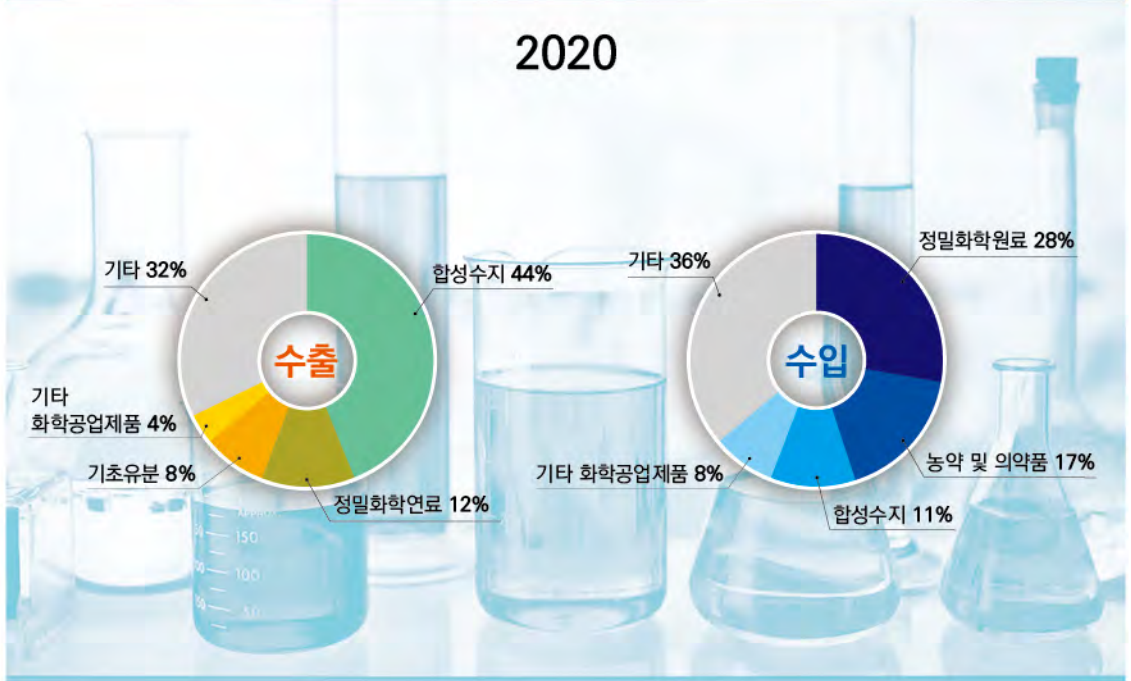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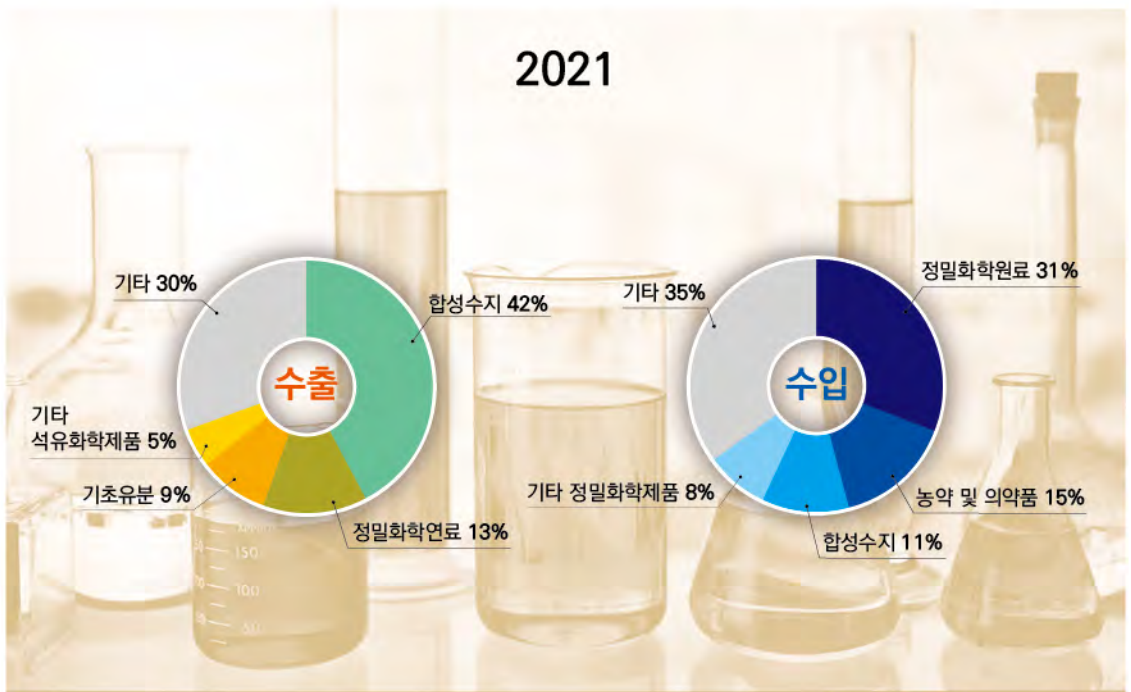


## 화학공업제품

2020



2021



# FTA 활용 UP!!

##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2 Vol. 01 (통권 37호)

(비매품)

---

**발행일** 2022년 03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TRADE REPORT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우 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2년 6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

---

---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

---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

---

---

FTA TRADE REPORT







[customs.go.kr/ftaportalkor/](http://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http://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제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